

경상북도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7052호 2026년 7월 21일(화)

경 상 북 도

■ 공 고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1441호) 3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441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 확보와 도정 현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폐지 및 신설(안 제4조)

- 폐지 : 재정특별보좌관
- 신설 : 사회소통특별보좌관

나) 실·국·본부 행정기구 조정

1) 신 설 (안 제6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본 청 : 「대변인*」,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 대변인은 종전 「과」 단위 기구에서 「국」 단위 기구로 개편

2) 폐 지 (규칙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22조)

- 본 청 :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

3) 명칭변경 (안 제15조의3)

- 본 청 : 「메타AI과학국」 → 「과학산업국」

다) 실·과 행정기구 조정

1) 신 설

- 본 청
 - 대변인 :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안 제6조)
 - 식품한류산업국 : 「식품정책과」, 「식품산업과」, 「식품한류과」 (안 제14조의2)
 - 복지건강국 : 「통합돌봄과」 (안 제20조)

- 지역본부
 - 해양수산물국 : 「수산산업과」 (안 제47조의6)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 「해외전염병대응과」 (안 제53조)

2) 통 · 폐합

- 분 청
 - 지방정부전략국 : 「대학정책과」 + 「청년정책과」 → 「대학청년과」 (안 제14조의3)
 - 공항투자본부 : 「공항추진과」 + 「항공추진과」 → 「공항추진단」 (안 제16조의2)

3) 확대개편

- 소방본부(안 제46조의3)
 - 119특수대응단 확대개편 : 「직할구조대」 + 「도청119구조대」
→ 「환동해특수구조대」, 「서부특수구조대」, 「북부특수구조대」

4) 분 리

- 분 청
 - 안전행정실 : 「재난관리과」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 제13조의2)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 「기후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안 제36조의3, 제36조의4)

5) 폐 지

- 분 청

- 「미래전략기획단」, 「외국인공동체과」, 「신도시조성지원과」, 「APEC유산과」,
「APEC시설과」

(규칙 제 8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 지역본부

- 환동해지역본부 : 「환동해전략기획단」 (규칙 제47조의4)

6) 명칭변경

○ 본 청

- 지방정부전략국 (안 제14조의3)
 - 「지방시대정책과」 → 「지방정부정책과」
 - 「저출생대응정책과」 → 「저출생대책과」
- 과학산업국 (안 제15조의3)
 - 「디지털메타버스과」 → 「인공지능정책과」
 - 「AI데이터과」 → 「인공지능산업과」
 - 「미래첨단산업과」 → 「첨단산업과」
 - 「바이오생명산업과」 → 「바이오산업과」

- 농축산유통국 (안 제18조)

- 「농식품유통과」 → 「농업유통과」
- 「동물방역과」 → 「동물방역복지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총무과」 → 「운영지원과」 (안 제27조)
- 보건환경연구원 : 「총무과」 → 「연구지원과」 (안 제34조)

○ 지역본부

- 환동해지역본부 : 「총무과」 → 「총괄운영관」 (안 제47조의3)
- 에너지산업국 : 「원자력산업과」 → 「원자력산업안전과」
(안 제47조의5)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정책과」 (안 제47조의6)

라) 기구 신설, 통폐합, 폐지 등에 따른 사무조정

1) 본 청

- 대변인 (안 제6조)
 - 홍보담당관
 - 종전 「대변인실」에서 “도정 홍보정책”, “공보행정”, “정책홍보자료 작성 및 연설문집 발간” 사무를 이관
 - 미디어담당관
 - 종전 「대변인실」에서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도정 홍보물 제작”, “뉴미디어 운용 및 홍보”,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 (안 제9조)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규제자유특구” 사무를 이관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기회발전특구” 사무를 이관
 - 「경제정책노동과」로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사무를 이관
- 기획조정실(안 제13조)
 - 정책기획관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및 관리”, “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 사무를 이관

- 정보통신담당관
 - 종전 「AI데이터과」에서 “공공데이터”, “데이터서비스”, “통계데이터” 사무를 이관
- 안전행정실(안 제13조의2)
 - 행정지원과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북교류”, “통일교육” 사무를 이관
 - 사회재난과
 - 종전 「재난관리과」에서 “사회재난대응·예방”, “시설물안전점검”, “민생사법경찰” 사무를 이관
 - 자연재난과
 - 종전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대응·예방·복구”, “지진방재” 사무를 이관
 - 회계관리과
 - “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 사무를 신설
- 식품한류산업국(안 제14조의2)
 - 식품정책과
 - “식품한류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보건정책과」에서 “식품안전 및 진흥” 사무를 이관
 - 종전 「동물방역과」에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사무를 이관
 - 식품산업과
 - “식품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식품창업 및 지원” 사무를 신설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산업” 사무를 이관
 - 종전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푸드테크·외식산업” 사무를 이관
 - 식품한류과

- “식품관광 활성화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식문화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경북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 사무를 신설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수출” 사무를 이관
- 지방정부전략국(안 제14조의3)
 - 지방정부정책과
 -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종전 「외국인정책과」에서 “외국인정책·지원”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사무를 이관
 - 「지역개발과」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 사무를 이관
 - 「대학청년과」로 “K-U시티” 사무를 이관
 - 「저출생대책과」로 “인구활력” 사무를 이관
 - 종전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유관기관·단체 유치”,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시행” 사무를 이관
 - 저출생대책과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인구활력” 사무를 이관
 - 종전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저출생총괄기획”, “저출생극복사업”, “출산장려”
사무를 이관
 - 대학청년과
 - 종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 “청년복지권익”, “청년문화소통” 사무를 이관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K-U시티” 사무를 이관
 - 여성가족과
 - 종전 「외국인공동체과」에서 “다문화정책 및 지원” 사무를 이관

- 교육청소년과
 - “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과학산업국(안 제15조의3)
 - 인공지능정책과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디지털정책”, “산학융합” 사무를 이관
 - 종전 「AI데이터과」에서 “인공지능정책”, “AI기반 조성”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로 “디지털산업”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규제자유특구”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로 “메타버스” 사무를 이관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K-과학자 지원”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
 - 종전 「AI데이터과」에서 “인공지능 활성화” 사무를 이관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디지털산업”, “메타버스” 사무를 이관
 -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공공데이터”, “데이터서비스”, “통계데이터” 사무를 이관
 - 소재부품산업과
 - 종전 「항공산업과」에서 “항공산업” 사무를 이관
 - 바이오산업과
 - 「식품산업과」로 “푸드테크”, “외식산업” 사무를 이관
- 경제통상국(안 제16조)
 - 경제정책노동과
 - 종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사무를 이관
- 공항투자본부(안 제16조의2)
 - 공항추진단
- 종전 「항공산업과」에서 “항공물류”, “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무를 이관
- 농축산유통국(안 제18조)
 - 농업대전환과
 - 「농업유통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무를 이관
 - 「스마트농업혁신과」에서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사무를 이관
 - 농업유통과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유통정책”, “브랜드마케팅”, “유통시설지원” 사무를 이관
 - 「스마트농업혁신과」에서 “양곡관리” 사무를 이관
 - 「농업대전환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무를 이관
 - 「식품산업과」로 “농식품산업” 사무를 이관
 - 「식품한류과」로 “농식품수출” 사무를 이관
 - 동물방역복지과
 - 「식품정책과」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사무를 이관
- 기후환경국(안 제19조)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관리과」로 “환경보건”,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이관
 - 환경관리과
 -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건”,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이관

- 복지건강국(안 제20조)
 - 사회복지과
 -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사업” 사무를 신설
 - 통합돌봄과
 - 「보건정책과」에서 “외로움대책”, “정신건강증진”, “치매관리”, “자살예방” 사무를 이관
 - 「어르신복지과」에서 “통합돌봄” 사무를 이관
 - 어르신복지과
 - 「통합돌봄과」로 “통합돌봄” 사무를 이관
 - 보건정책과
 - 「통합돌봄과」로 “외로움대책”, “정신건강증진”, “치매관리”, “자살예방” 사무를 이관
- 건설도시국(안 제21조)
 - 도시계획과
 - 종전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신도시개발”, “도청신도시 활성화” 사무를 이관

2) 농업기술원

- 운영지원과(안 제27조)
 - 종전 「총무과」 사무를 이관
- 농촌지원국(안 제29조)
 - 기획교육과
 -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이관
 - 기술보급과
 - 「기획교육과」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이관

- 「농업테크노파크과」에서 “스마트농업” 사무를 이관

- 농업테크노파크과

- 「기술보급과」로 “스마트농업” 사무를 이관

3)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지원과(안 제34조)

- 종전 「총무과」 사무를 이관

- 기후환경연구부(안 제36조의3)

- 종전 「환경연구부」에서 “대기질평가”, “산업대기”, “생활환경”, “토양폐기물” 사무를 이관

- 물환경연구부(안 제36조의4)

- 종전 「환경연구부」에서 “수계조사”, “산업폐수”, “먹는물검사” 사무를 이관

- 북부지원(안 제38조)

- 수질분석과

- 종전 「먹는물검사와」 사무를 이관

4) 소방학교 (안 제41조)

- 기획교육과

- “가축개량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삭제

5) 119특수대응단 (안 제46조의3)

- 「환동해·서부·북부특수구조대」에 다음 사무를 신설

- 권역 내 특수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시 긴급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인명 탐색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19구조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6) 환동해지역본부

- 총괄운영관(안 제47조의3)
 - 종전 「충무민원실」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환동해발전 정책”,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 사무를 이관
- 에너지산업국(안 제47조의5)
 - 에너지정책과
 - 「미래에너지수소과」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 사무를 이관
 - 미래에너지수소과
 - 「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 사무를 이관
- 해양수산물국(안 제47조의6)
 - 해양수산물국장
 - 「해양수산물정책과」, 「수산물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 해양수산물정책과
 - 종전 「해양수산물과」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사무를 이관

- 「수산산업과」로 “수산물유통”, “수산자원” 사무를 이관
- 수산산업과
 - 종전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유통”, “수산자원”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신산업” 사무를 이관
 -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해양레저관광과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문화”,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육성” 사무를 이관

7) 동물위생시험소 (안 제53조)

- 방역과
 - 「해외전염병대응과」로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무를 이관
- 조류질병과
 - 「해외전염병대응과」로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사무를 이관
- 해외전염병대응과
 - “해외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검사” 사무를 신설
 - 「방역과」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무를 이관
 - 「조류질병과」에서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사무를 이관
 - “기타 신규 질병에 관한 사항” 사무를 신설

8) 기타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안 제44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19안전센터, 직할구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

나.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971명 → 8,079명(+108명)

나. 정원조정 내역

1) 정원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가) 본 청 : 1,588명 → 1,640명(+52명)

나) 도의회 : 161명(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5,610명 → 5,669명(+59명)

라) 지역본부 : 209명 → 207명(△2명)

마) 사업소 : 374명 → 373명(△1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22명(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7명(변동 없음)

2) 직종·직렬별 조정내역

가) 정무직 : 3명(변동 없음)

나) 일반직 : 2,183명 → 2,220명(+37명)

○ 2급 : 2명 → 1명(△1명)

- 이사관 △1

○ 2 ~ 3급 : 2명(변동 없음)

○ 3급 : 15명 → 16명(+1명)

- 부이사관 +1

○ 3 ~ 4급 : 3명(변동 없음)

- 4급 : 104명 → 103명(△1명)
 - 행정 △3, 행정·과학기술 +2
- 5급 : 441명 → 455명(+14명)
 - 공업 +1, 녹지 +1, 수의 +1, 시설 +1, 행정·공업 +3, 행정·해양수산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수의·수의연구관 +1, 행정·보건 +1, 행정·사회 복지·보건 +1, 행정·보건·간호 +1,
- 6급 : 726명 → 742명(+16명)
 - 세무 +1, 수의 +1, 시설 +2, 시설관리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2,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2, 행정·시설 +2, 보건·간호 +1
 - 행정 △1, 공업 △1, 녹지 △1, 보건 △1, 열관리운영 △1
- 7급 : 649명 → 660명(+11명)
 - 행정 +3, 녹지 +1,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1, 행정·식품위생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1, 공업·녹지 +1, 보건·간호 +1
 - 공업 △3, 보건 △1, 수의·수의연구사 △3
- 8급 : 213명 → 210명(△3명)
 - 식품위생 +1, 시설 +1,
 - 행정 △2, 공업 △1, 시설관리 △1, 운전 △1,
- 9급 : 12명(변동 없음)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 없음)

다)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 없음)

- 1급 상당 : 1명(변동 없음)
- 4급 상당 : 3명(변동 없음)
- 5급 상당 : 9명(변동 없음)
- 6급 상당 : 1명 → 2명(+1)
- 7급 상당 : 2명 → 1명(△1)

라) 연구직 공무원 : 245명 → 246명(+1명)

- 연구관 : 47명 → 48명(+1)
 - 농업연구관 : 25명 (변동 없음)
 - 보건연구관 : 6명 → 5명(△1)
 - 환경연구관 : 7명 (변동 없음)
 -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 9명 → 11명(+2)
- 연구사 : 198명 (변동 없음)
 - 학예연구사 : 2명(변동 없음)
 - 기록연구사 : 4명(변동 없음)
 - 공업연구사 : 2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 : 78명(변동 없음)
 - 녹지연구사 : 10명(변동 없음)
 - 수의연구사 : 7명(변동 없음)
 - 해양수산연구사 : 10명(변동 없음)
 - 보건연구사 : 32명 → 31명(△1)
 - 환경연구사 : 46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환경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 3명 → 4명(+1)
- 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 1명(변동 없음)

마) 지도직 공무원 : 31명 → 32명(+1)

- 농촌지도관 : 10명 (변동 없음)
- 농촌지도사 : 21명 → 22명(+1)

바) 소방직 공무원 : 5,489명 → 5,558명(+69명)

- 소방정 : 31명(변동 없음)
- 소방령 : 138명 → 141명(+3명)
- 행정5급·소방령 : 1명(변동 없음)
- 소방경 : 443명 → 449명(+6명)
- 행정6급·소방경 : 1명(변동 없음)
- 소방위 : 505명 → 518명(+13명)
- 행정7급·소방위 : 1명(변동 없음)
- 소방장 : 753명 → 762명(+9명)
- 소방교 : 1,175명 → 1,185명(+10명)
- 소방사 : 2,441명 → 2,469명(+28명)

사) 경찰직 공무원 : 4명(변동 없음)

2.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개인은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 주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054-880-2123
- Fax : 054-880-2149
- 이메일 : flyme2u@korea.kr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유사·중복 기능 통합 및 기구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성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 「민선 9기」 공약 실행력 확보 및 도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폐지 및 신설(안 제4조)

- 폐지 : 재정특별보좌관
- 신설 : 사회소통특별보좌관

나. 실·국·본부 행정기구 조정

1) 신 설 (안 제6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본 청 : 「대변인*」,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 대변인은 종전 「과」 단위 기구에서 「국」 단위 기구로 개편

2) 폐 지 (규칙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22조)

- 본 청 :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APEC준비지원단」

3) 명칭변경 (안 제15조의3)

- 본 청 : 「메타AI과학국」 → 「과학산업국」

다. 실·과 행정기구 조정

1) 신 설

○ 본 청

- 대변인 :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안 제6조)
- 식품한류산업국 : 「식품정책과」, 「식품산업과」, 「식품한류과」 (안 제14조의2)
- 복지건강국 : 「통합돌봄과」 (안 제20조)

○ 지역본부

- 해양수산국 : 「수산산업과」 (안 제47조의6)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 「해외전염병대응과」 (안 제53조)

2) 통·폐합

○ 본 청

- 지방정부전략국 : 「대학정책과」 + 「청년정책과」 → 「대학청년과」 (안 제14조의3)
- 공항투자본부 : 「공항추진과」 + 「항공추진과」 → 「공항추진단」 (안 제16조의2)

3) 확대개편

○ 소방본부(안 제46조의3)

- 119특수대응단 확대개편 : 「직할구조대」 + 「도청119구조대」
→ 「환동해특수구조대」, 「서부특수구조대」, 「북부특수구조대」

4) 분 리

○ 본 청

- 안전행정실 : 「재난관리과」 →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안 제13조의2)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 「기후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안 제 36조의3, 제36조의4)

5) 폐 지

- 본 청

- 「미래전략기획단」, 「외국인공동체과」, 「신도시조성지원과」, 「APEC유산과」, 「APEC시설과」 (규칙 제 8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 지역본부

- 환동해지역본부 : 「환동해전략기획단」 (규칙 제47조의4)

6) 명칭변경

- 본 청

- 지방정부전략국 (안 제14조의3)
 - 「지방시대정책과」 → 「지방정부정책과」
 - 「저출생대응정책과」 → 「저출생대책과」
- 과학산업국 (안 제15조의3)
 - 「디지털메타버스과」 → 「인공지능정책과」
 - 「AI데이터과」 → 「인공지능산업과」
 - 「미래첨단산업과」 → 「첨단산업과」
 - 「바이오생명산업과」 → 「바이오산업과」
- 농축산유통국 (안 제18조)
 - 「농식품유통과」 → 「농업유통과」

- 「동물방역과」 → 「동물방역복지과」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총무과」 → 「운영지원과」 (안 제27조)
 - 보건환경연구원 : 「총무과」 → 「연구지원과」 (안 제34조)
- 지역본부
 - 환동해지역본부 : 「총무과」 → 「총괄운영관」 (안 제47조의3)
 - 에너지산업국 : 「원자력산업과」 → 「원자력산업안전과」 (안 제47조의5)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정책과」 (안 제47조의6)

라. 기구 신설, 통폐합, 폐지 등에 따른 사무조정

1) 본 청

- 대변인 (안 제6조)
 - 홍보담당관
 - 종전 「대변인실」에서 “도정 홍보정책”, “공보행정”, “정책홍보자료 작성 및 연설문집 발간” 사무를 이관
 - 미디어담당관
 - 종전 「대변인실」에서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 “도정 홍보물 제작”, “뉴미디어 운용 및 홍보”,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 (안 제9조)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규제자유특구” 사무를 이관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기회발전특구” 사무를 이관
 - 「경제정책노동과」로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사무를 이관

- 기획조정실(안 제13조)
 - 정책기획관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및 관리”, “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 사무를 이관
- 안전행정실(안 제13조의2)
 - 행정지원과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남북교류”, “통일교육” 사무를 이관
 - 사회재난과
 - 종전 「재난관리과」에서 “사회재난대응·예방”, “시설물안전점검”, “민생사법경찰” 사무를 이관
 - 자연재난과
 - 종전 「재난관리과」에서 “자연재난대응·예방·복구”, “지진방재” 사무를 이관
 - 회계관리과
 - “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 사무를 신설
- 식품한류산업국(안 제14조의2)
 - 식품정책과
 - “식품한류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보건정책과」에서 “식품안전 및 진흥” 사무를 이관
 - 종전 「동물방역과」에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사무를 이관
 - 식품산업과
 - “식품산업 육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식품창업 및 지원” 사무를 신설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산업” 사무를 이관
 - 종전 「바이오생명산업과」에서 “푸드테크·외식산업” 사무를 이관

- 식품한류과

- “식품관광 활성화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식문화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경북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 사무를 신설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수출” 사무를 이관

○ 지방정부전략국(안 제14조의3)

- 지방정부정책과

-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종전 「외국인정책과」에서 “외국인정책·지원”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기회발전특구” 사무를 이관
- 「지역개발과」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 사무를 이관
- 「대학청년과」로 “K-U시티” 사무를 이관
- 「저출생대책과」로 “인구활력” 사무를 이관
- 종전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유관기관·단체 유치”,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시행” 사무를 이관

- 저출생대책과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인구활력” 사무를 이관
- 종전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저출생총괄기획”, “저출생극복사업”, “출산장려” 사무를 이관

- 대학청년과

- 종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 “청년복지권익”, “청년문화소통” 사무를 이관
- 종전 「지방시대정책과」에서 “K-U시티” 사무를 이관

- 여성가족과

- 종전 「외국인공동체과」에서 “다문화정책 및 지원” 사무를 이관
- 교육청소년과
 - “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사무를 신설
- 과학산업국(안 제15조의3)
 - 인공지능정책과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디지털정책”, “산학융합” 사무를 이관
 - 종전 「AI데이터과」에서 “인공지능정책”, “AI기반 조성”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로 “디지털산업”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으로 “규제자유특구”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로 “메타버스” 사무를 이관
 - 종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K-과학자 지원” 사무를 이관
 - 인공지능산업과
 - 종전 「AI데이터과」에서 “인공지능 활성화” 사무를 이관
 - 종전 「디지털메타버스과」에서 “디지털산업”, “메타버스” 사무를 이관
 -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공공데이터”, “데이터서비스”, “통계데이터” 사무를 이관
 - 소재부품산업과
 - 종전 「항공산업과」에서 “항공산업” 사무를 이관
 - 바이오산업과
 - 「식품산업과」로 “푸드테크”, “외식산업” 사무를 이관
- 경제통상국(안 제16조)
 - 경제정책노동과
 - 종전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사무를 이관

- 「경제혁신추진단」에서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사무를 이관
- 공항투자본부(안 제16조의2)
 - 공항추진단
- 종전 「항공산업과」에서 “항공물류”, “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무를 이관
- 농축산유통국(안 제18조)
 - 농업대전환과
 - 「농업유통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무를 이관
 - 「스마트농업혁신과」에서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사무를 이관
 - 농업유통과
 - 종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유통정책”, “브랜드마케팅”, “유통시설지원” 사무를 이관
 - 「스마트농업혁신과」에서 “양곡관리” 사무를 이관
 - 「농업대전환과」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무를 이관
 - 「식품산업과」로 “농식품산업” 사무를 이관
 - 「식품한류과」로 “농식품수출” 사무를 이관
 - 동물방역복지과
 - 「식품정책과」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사무를 이관
- 기후환경국(안 제19조)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관리과」로 “환경보건”,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이관
 - 환경관리과
 -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건”,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이관

- 복지건강국(안 제20조)
 - 사회복지과
 -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사업” 사무를 신설
 - 통합돌봄과
 - 「보건정책과」에서 “외로움대책”, “정신건강증진”, “치매관리”, “자살예방” 사무를 이관
 - 「어르신복지과」에서 “통합돌봄” 사무를 이관
 - 어르신복지과
 - 「통합돌봄과」로 “통합돌봄” 사무를 이관
 - 보건정책과
 - 「통합돌봄과」로 “외로움대책”, “정신건강증진”, “치매관리”, “자살예방” 사무를 이관
- 건설도시국(안 제21조)
 - 도시계획과
 - 종전 「신도시조성지원과」에서 “신도시개발”, “도청신도시 활성화” 사무를 이관

2) 농업기술원

- 운영지원과(안 제27조)
 - 종전 「총무과」 사무를 이관
- 농촌지원국(안 제29조)
 - 기획교육과
 -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이관
 - 기술보급과

- 「기획교육과」로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이관
- 「농업테크노파크과」에서 “스마트농업” 사무를 이관
- 농업테크노파크과
- 「기술보급과」로 “스마트농업” 사무를 이관

3) 보건환경연구원

- 연구지원과(안 제34조)
 - 종전 「총무과」 사무를 이관
- 기후환경연구부(안 제36조의3)
 - 종전 「환경연구부」에서 “대기질평가”, “산업대기”, “생활환경”, “토양폐기물” 사무를 이관
- 물환경연구부(안 제36조의4)
 - 종전 「환경연구부」에서 “수계조사”, “산업폐수”, “먹는물검사” 사무를 이관
- 북부지원(안 제38조)
 - 수질분석과
 - 종전 「먹는물검사와」 사무를 이관

4) 소방학교 (안 제41조)

- 기획교육과
- “가축개량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삭제

5) 119특수대응단 (안 제46조의3)

- 「화동해·서부·북부특수구조대」에 다음 사무를 신설
- 권역 내 특수재난 발생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시 긴급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인명 탐색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119구조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6) 환동해지역본부

- 총괄운영관(안 제47조의3)
 - 종전 「총무민원실」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환동해발전 정책”,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 사무를 이관
- 에너지산업국(안 제47조의5)
 - 에너지정책과
 - 「미래에너지수소과」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 사무를 이관
 - 미래에너지수소과
 - 「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 사무를 이관
- 해양수산국(안 제47조의6)
 - 해양수산국장
 - 「해양수산정책과」,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
 - 해양수산정책과

- 종전 「해양수산물」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사무를 이관
- 「수산산업과」로 “수산물유통”, “수산자원” 사무를 이관
- 수산산업과
 - 종전 「해양수산물」에서 “수산물유통”, “수산자원” 사무를 이관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신산업” 사무를 이관
 -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 해양레저관광과
 - 종전 「환동해전략기획단」에서 “해양문화”,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육성” 사무를 이관

7) 동물위생시험소 (안 제53조)

- 방역과
 - 「해외전염병대응과」로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무를 이관
- 조류질병과
 - 「해외전염병대응과」로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사무를 이관
- 해외전염병대응과
 - “해외질병 방역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검사” 사무를 신설
 - 「방역과」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 사무를 이관
 - 「조류질병과」에서 “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 사무를 이관
 - “기타 신규 질병에 관한 사항” 사무를 신설

8) 기타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안 제44조)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119안전센터, 직할구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경제혁신추진단)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경제혁신추진단-4318(2026. 7. 20.)호

- 나.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10611(2026. 7. 20.)호

- 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7577(2026. 7. 20.)호

- 마. 예산 수반사항(예산담당관)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예산담당관-9278(2026. 7. 20.)호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 및 미래전략기획단”을 “감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정책특별보좌관·재정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정책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로, “정책특별보좌관·재정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정책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대변인에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을 둔다.
-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홍보담당관·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공포에 관한 사항

4. 도정 홍보물 제작

5.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

6. 도정 연설문집 발간

7.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⑤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2. 인터넷 방송·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

4.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 등

5.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9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단갈등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책금융에 관한 사항
6. 경제특구·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7.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지정
8.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운영·관리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지시사항”을 “지시사항·공약사항”으로 한다.

2. 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

제13조제7항제8호 중 “4차산업”을 “4차산업혁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통신시설 및 행정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 민원 및 영상·방송중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데이터 수집·개방 및 활용
1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1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4.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
15. 통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
1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7.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18.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
19. 지역통계의 품질관리
20.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

제13조의2제1항 중 “안전정책과·행정지원과·재난관리과·새마을봉사과·회계관리과·인재복지과”를 “안전정책과·행정지원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새마을봉사과·회계관리과·인재복지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안전정책과장·행정지원과장·재난관리과장·새마을봉사과장·회계관리과장”을 “안전정책과장·행정지원과장·사회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새마을봉사과장·회계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9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시행
1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
13. 그 밖의 사회재해에 관한 사항
- ⑧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기) 등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3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식품한류산업국에 두는 과) ① 식품한류산업국에 식품정책과 · 식품산업과 · 식품한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산업과장 · 식품한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품안전 · 식품진흥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 운영
6. 지역 식품업소 육성 · 지원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
8.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9.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
10.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
11.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관리
13.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기반 조성
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
4. 전통식품 산업 육성
5. 식품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⑤ 식품한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관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관광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
3. 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
5. 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식품관광·한류 정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지방정부전략국에 두는 과) ① 지방정부전략국에 지방정부정책과·저출생 대책과·대학청년과·아이돌봄과·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정부정책과장·저출생대책과장·대학청년과장·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

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시행
6.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9. 광역비자·지역특화형 비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사항
14. 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
15.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
17. 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④ 저출생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저출생대책 정책 총괄 조정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
5. 부자·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7. 저출생 극복 선도사업 발굴 추진
8. 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9. 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10. 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12.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5.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저출생대책 정책에 관한 사항

⑤ 대학청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2. 경북학숙 운영·지원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 청년 정책·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
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9. 평생교육 기획·조정
10.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학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⑥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2. 경북형 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가 돌봄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시설 운영·지원
5. 아이돌봄시설 지도·관리·점검
6.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
7.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8. 보육법인·단체 등 관리
9.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10.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1. 영유아 보육 지원
12. 어린이집 지도·감독·평가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14. 경북형 K-보듬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15. K-보듬 아이돌봄 사업 운영 및 확대

16. 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
- ⑦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3.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
 4.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
 5. 여성의 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6. 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
 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
 11.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3. 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5.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6. 그 밖에 여성가족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 ⑧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
 2.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4.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수당 지원
6.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7. 청소년 보호·육성
8.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부모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2. 늘봄학교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아동 및 교육·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과학산업국에 두는 과) ① 과학산업국에 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산업과·첨단산업과·소재부품산업과·바이오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공지능정책과장·인공지능산업과장·소재부품산업과장·바이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
2. 인공지능 관련 법령 대응 및 중앙부처 협력사업 발굴
3.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집적단지 구축
7.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8.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9. (재)경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12. K-과학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

④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및 지역 산업융합 촉진 지원
2. 인공지능·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인공지능·소프트웨어기술 도입 및 활용 확산
4.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5. 4차 산업혁명 전략·실행위원회 운영
6.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9. 디지털 트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가상융합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운영
 13.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
 14. XR·AR·MR 디바이스 개발지원
 15.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⑤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3. 기초과학 육성·지원
 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원
 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학문화 확산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
 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추진단 운영
 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지원
 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추진단 운영
 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지원
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
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
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계 조성 추진
17. 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18. 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
19. 그 밖에 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⑥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산업 육성
2. 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
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4.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5.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6.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7. 방위산업 육성
8. 항공산업 육성
9.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11. 기계부품산업 육성<개정 2025. 6. 9.>
12. 섬유탄소산업 육성
13. 뿌리산업 육성
14. 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

15.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⑦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
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
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
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
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
6. 재활·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
8.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 지원
9.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첨단바이오·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11.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5.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6.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7. 청년창업가 육성·지원 및 재창업자 지원
10. 노동감독 권한 위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5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8호) 중 "시책수립"을 "시책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1호)로 하며 같은 호 중 "민생경제 활성화"를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2. 지방물가 안정 관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특수거래분야 관리 및 지도 점검

제16조의2제1항 중 “투자유치단·공항추진과·항공산업과”를 “투자유치단·공항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자유치단장·공항추진과장”을 “투자유치단장·공항추진단장”으로,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항추진과장”을 “공항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공항”을 “항공물류, 공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8.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9. 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농업대전환과 · 농식품유통과 · 스마트농업혁신과 · 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과”를 “농업대전환과 · 농업유통과 · 스마트농업혁신과 · 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대전환과장 · 농식품유통과장 ·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을 “농업대전환과장 · 농업유통과장 · 스마트농업혁신과장”으로, “동물방역과장”을 “동물방역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28. 곤충·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 · 농 상생 교류촉진 사업 추진
2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3.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24. 귀농 · 귀촌에 관한 사무
25. 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제5항제1호 중 “친환경 · 스마트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쌀소득,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을 "공익증진, 전략작물, 경관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친환경·스마트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방역과장”을 “동물방역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 및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매물지 관리”를 “매물지 및 가축질병 피해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교육, 환경 분쟁 조정”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생태공원·구조센터”를 “생태공원·치료센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9.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를 "사회복지과·통합돌봄과·어르신복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및 어르신복지과장은"을 "사회복지과장은"으로, "장애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을 "통합돌봄과장·장애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호 중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랑인·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을 "노숙인 등 시설 운영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부랑인 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인·허가 및 지도 감독"을 "복지건강국 소관 사단법인 등 설립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사업

제2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돌봄 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추진
2.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관련 민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관련 교육 기획 및 시행
6. 통합돌봄 연계사업(보건·의료·요양·돌봄) 시행 지원
7.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9. 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신응급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

12. 재난정신건강심리지원
13. 외로움 대책 수립 및 시행
14. 치매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6.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7. 치매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리
21.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살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23.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4.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를 "노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공동, 단기, 주간) 운영 지원"을 "장애인 거주시설(거주, 단기, 공동) 운영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회복지법인(장애인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를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장애인 건강권 관련 사항
1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식품위생 및 약무행정"을 "약무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제3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3호(종전의 제32호) 중 "보건정책 및 식품위생"을 "보건정책"으로 한다.

32. 의료기기·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

제2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6호(종전의 제19호) 중 "감염병관리 및 공공·응급의료"를 "공공·응급의료 및 감염병관리"로 한다.

15.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필수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1.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2. 지역응급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23.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에 관한 사항
24. 응급환자 이송·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5.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중 “신도시조성지원과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 · 지역개발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 토지정보과장 및 신도시조성지원과장”을 “도시계획과장 · 지역개발과장 · 건축디자인과장 · 토지정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8.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총무과 · 연구개발국”을 “운영지원과 · 연구개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제29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

10.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

제29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총무과 및 감염병연구부·식의약연구부·환경연구부”를 “연구지원과 및 감염병연구부·식의약연구부·기후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감염병연구부장 및 식의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을 “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식의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총무과)”를 “(연구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제5호 중 “모기매개”를 “모기 및 진드기 매개”로 한다.

제36조제5항제5호 중 “잔류동물의약품”을 “잔류동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기후환경연구부) ① 기후환경연구부에 대기질평가과·산업대기과·생활환경과·토양폐기물과를 둔다.

② 대기질평가과장·산업대기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2.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
3.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
4.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
5.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6.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7.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

④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
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
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
4. 대기 및 악취 등에 대한 조사연구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
3.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

4.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
5. 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
6.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

⑥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
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
3. 폐기물처분(소각)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검사
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경 영향 조사·연구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산업폐수과·먹는물검사와를 둔다.

② 수계조사과장·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2. 수자원 안전성 검사
3. 하천·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수의 유해화학·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

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장 폐수 검사
2. 오수·분뇨·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
4.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
5. 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
6. 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

⑤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
2. 환경미생물 검사
3. 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제38조제1항 중 “환경분석과·먹는물검사”를 “환경분석과·수질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물검사과장”을 “수질분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단위시설별”을 “단위 시설별”로 한다.

1. 북부지원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제3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먹는물검사과장”을 “수질분석과장”으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먹는 물”을 각각 “먹는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잔류동물의약품”을 “잔류동물용 의약품”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119안전센터의 설치)”를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19안전센터를 두며, 119안전센터”를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을”을 “소속직원(해당 지역 119지역대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직할구조대를 둔다”를 “환동해특수구조대, 서부특수구조대, 북부특수구조대를 두며, 각 위치는 별표4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할구조대장”을 “환동해·서부·북부특수구조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권역 내 특수재난 사고 초동 대응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2.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시 긴급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인명 탐색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7.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

제46조의5제2항 중 “팀장은 소방경”을 “과장 및 각 대장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총무민원실 · 환동해전략기획단 · 에너지산업국 · 해양수산업 · 어업기술원”을 “총괄운영관 · 에너지산업국 · 해양수산업 · 어업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를 “총괄운영관은 지방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총무민원실)”을 “(총괄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민원실장”을 “총괄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환동해발전 정책 기획 · 조정
14.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15.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를 삭제한다.

제47조의5제1항 중 “원자력산업과”를 “원자력산업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1호 중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수소연료전지”를 “수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산업과장”을 “원자력산업안전과장”으로 한다.

14.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의6제1항 중 “해양수산물 · 독도해양정책과”를 “해양수산물정책과 · 수산산업과 · 독도해양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해양수산물”을 “해양수산물정책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7조의6제3항 중 “해양수산물과장”을 “해양수산물정책과장 · 수산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물과장”을 “해양수산물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제47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수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물 유통 · 가공 · 수출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2. 수산물 소비촉진 · 원산지표시 · 안전에 관한 사항
3. 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보조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울릉도 · 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6.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
7. 해양수산물분야 4차산업 대응
8.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9. 해양기술·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증 지원
10.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사항

제47조의6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부터 제13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

제53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방역과·축산물검사와·질병진단과·조류질병과 및 정밀분석과”를 “운영지원과·방역과·축산물검사와·질병진단과·조류질병과·정밀분석과 및 해외전염병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역과장·축산물검사와장·질병진단과장·조류질병과장 및 정밀분석과장”을 “방역과장·축산물검사와장·질병진단과장·조류질병과장·정밀분석과장 및 해외전염병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해외전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규 해외질병 방역대책수립
2.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및 검진
3. 렘피스킨, TSE, 모기매개질병 예찰
4. 기타가축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5. 기타 해외전염병 및 신규 질병에 관한 사항

별표2,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4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신설,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119안전센터·119지역대의 명칭·위치, 센터장직급 및 관할구역(제44조제1항 관련)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포항북부 소 방 서	덕 산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소방령	포항시 대흥동, 신흥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덕산동, 덕수동, 동빈로1가, 동빈로2가, 용흥동, 죽도동, 득량동, 학잠동 일원
	두 호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소방경	포항시 두호동, 우현동, 창포동, 항구동, 학산동, 대신동 일원
	흥 해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 67	소방경	포항시 흥해읍 일원
	청 하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로 267	소방경	포항시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일원
	장 량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8	소방경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일원
	기 계 119안전센터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71	소방경	포항시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일원
포항남부 소 방 서	일 월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소방경	포항시 청림동, 일월동, 인덕동, 동촌동, 송정동, 송내동, 동해면 일원
	제 철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0	소방경	포항시 괴동동, 장흥동, 호 동, 대송면 일원
	해 도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중앙로 118	소방경	포항시 상도동, 해도동, 송도동, 대도동 일원
	효 자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지곡로212번길 45	소방경	포항시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 동 일원
	구룡포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5	소방경	포항시 구룡포읍, 호미곶면 일원
	오 천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369	소방경	포항시 오천읍, 장기면 일원
	장 기 119지역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길 111	-	포항시 장기면 일원
	연 일 119안전센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14	소방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울 립 119안전센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415	소방령	울릉군 일원
	북 면 119지역대	울릉군 북면 천부3길 24	-	울릉군 북면, 서면 일원
경주소방서	황 오 119안전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소방령	경주시 황오동, 성동동, 동천동, 구황동, 배반동, 인왕동, 교 동, 동방동, 남산동, 내남면 일원
	내 남 119지역대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1508	-	경주시 내남면 일원
	동 부 119안전센터	경주시 중앙로 59	소방경	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석장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경동, 탑 동, 충효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황남동, 울 동, 배 동 일원
	보 문 119안전센터	경주시 경감로 587-8	소방경	경주시 천군동, 암곡동, 손곡동, 북군동, 황용동, 덕 동, 보문동, 신평동, 천북면 일원
	불국사 119안전센터	경주시 불국신택지4길 4	소방경	경주시 진현동, 마 동, 하 동, 구정동, 조양동, 도지동, 시래동, 서 동, 평 동 일원
	용 황 119안전센터	경주시 공단로 6	소방경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현곡면 일원
	안 강 119안전센터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146	소방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일원
	양 동 119지역대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65-48	-	경주시 양동마을 일원
	외 동 119안전센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78-15	소방경	경주시 외동읍 일원
	감 포 119안전센터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153	소방경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일원
	양 남 119지역대	경주시 양남면 양남로 347-3	-	경주시 양남면 일원
	문무대왕 119지역대	경주시 문무대왕면 감은로 53-11	-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
	건 천 119안전센터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65	소방경	경주시 건천읍, 산내면, 서 면 일원
	서 면 119지역대	경주시 서면 아화리 362-2	-	경주시 서 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김천소방서	양 금 119안전센터	김천시 강변로 219	소방경	김천시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지좌동, 덕곡동, 양천동, 감천면 일원
	다 수 119안전센터	김천시 영남대로 1246	소방경	김천시 부곡동, 다수동, 백옥동, 교 동, 삼락동, 문당동, 대항면, 봉산면 일원
	대 광 119안전센터	김천시 공단로 152-36	소방경	김천시 신음동, 대광동, 응명동, 어모면, 개령면 일원
	지 레 119안전센터	김천시 지례면 장터길 115	소방경	김천시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일원
	울 곡 119안전센터	김천시 혁신7로 46	소방경	김천시 울곡동, 농소면 일원
	아 포 119안전센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45	소방경	김천시 아포읍, 남 면, 감문면 일원
안동소방서	법 흥 119안전센터	안동시 육사로301	소방령	안동시 강남동, 안기동, 평화동, 태화동, 서구동, 명륜동, 중구동, 일직면, 남후면 일원
	일 직 119지역대	안동시 일직면 안평일직길 1313	-	안동시 일직면, 남후면 일원
	용 상 119안전센터	안동시 마들6길 27	소방경	안동시 용상동, 성곡동, 석동동, 송천동, 임동면, 임하면, 길안면, 남선면 일원
	길 안 119지역대	안동시 길안면 의성길안로 2564	-	안동시 길안면 일원
	풍 산 119안전센터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2	소방경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일원
	하 회 119지역대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3-19	-	안동시 하회마을 일원
	옥 동 119안전센터	안동시 광명로 85	소방경	안동시 옥 동, 송하동, 서후면, 북후면 일원
	북 후 119지역대	안동시 북후면 와북로 5	-	안동시 북후면 일원
	서 후 119지역대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367	-	안동시 서후면 일원
	도 산 119안전센터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71	소방경	안동시 도산면, 와룡면, 예안면, 녹전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구미소방서	공 단 119안전센터	구미시 수출대로 112	소방령	구미시 공단동, 신평동, 비산동 일원
	송 정 119안전센터	구미시 백산로 207	소방경	구미시 송정동, 남통동, 형곡동 일원
	원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업로 174	소방경	구미시 원평동, 지산동, 도량동 일원, 양호동(591-1 ~ 398번지) 일부
	봉 곡 119안전센터	구미시 봉곡동로 48	소방경	구미시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일원
	인 동 119안전센터	구미시 이계북로 147	소방경	구미시 인의동, 황상동, 신 동, 구평동, 진평동, 시미동, 임수동 일원
	선 산 119안전센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400-13	소방경	구미시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일원
	해 평 119안전센터	구미시 해평면 강동로 1663	소방경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장천면, 산동읍(제외 : 봉산리) 일원
	상 림 119안전센터	구미시 상림로 45	소방경	구미시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광평동 일원
	옥 계 119안전센터	구미시 산동읍 산호대로41번길 4	소방경	구미시 옥계동, 구포동, 금전동, 거의동, 양호동(제외 : 591-1 ~ 398 번지) 일부, 산동읍(봉산리) 일부
	고 아 119안전센터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821	소방경	구미시 고아읍 일원
영주소방서	문 수 119안전센터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소방경	영주시 휴천동, 조암동, 적서동, 문정동, 문수면, 평은면, 이산면 가흥1동 일원
	가 흥 119안전센터	영주시 선비로 181	소방경	영주시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 장수면, 안정면 일원
	풍 기 119안전센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59	소방경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일원
	순 흥 119지역대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80번길4	-	영주시 순흥면 일원
	부 석 119지역대	영주시 부석면 부석로 1	-	영주시 부석면, 단산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영천소방서	동 부 119안전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소방경	영천시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일원
	화 남 119지역대	영천시 화남면 천문로 1748	-	영천시 화남면, 화북면 일원
	남 부 119안전센터	영천시 한방로 176	소방경	영천시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원
	북 안 119지역대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2058	-	영천시 북안면 일원
	금 호 119안전센터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5	소방경	영천시 금호읍, 대창면 일원
	신 녕 119안전센터	영천시 신녕면 어릿골길 11	소방경	영천시 신녕면, 화산면, 청통면 일원
	청 통 119지역대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로 207	-	영천시 청통면 일원
상주소방서	만 산 119안전센터	상주시 경상대로 3203-11	소방경	상주시 남원동,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동성동, 신흥동, 사벌면, 내서면, 외서면 일원
	함 창 119안전센터	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46-1	소방경	상주시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일원
	은 척 119지역대	상주시 은척면 봉림길 14	-	상주시 은척면 일원
	낙 동 119안전센터	상주시 낙동면 낙운로 3	소방경	상주시 낙동면, 중동면 일원
	청 리 119안전센터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152	소방경	상주시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일원
	화 서 119안전센터	상주시 화서면 상현무동길 5	소방경	상주시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모동면, 모서면 일원
	모 서 119지역대	상주시 모서면 삼포순환로 199	-	상주시 모동면, 모서면 일원
	화 북 119지역대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754	-	상주시 화북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문경소방서	점 촌 119안전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소방경	문경시 점촌1~3동, 영순면, 호계면 일원
	모 전 119안전센터	문경시 모전로 1694	소방경	문경시 점촌4동, 점촌5동 일원
	가 은 119안전센터	문경시 가은읍 가은로 126	소방경	문경시 가은읍, 농암면 일원
	문 경 119안전센터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356	소방경	문경시 문경읍, 마성면 일원
	산 북 119안전센터	문경시 산북면 강동로 57	소방경	문경시 산북면, 산양면, 동로면 일원
	동 로 119지역대	문경시 동로면 적성큰마길 3	-	문경시 동로면 일원
경산소방서	압 량 119안전센터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소방령	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대평동, 조영동, 갑제동, 대 동, 압량읍 일원
	중 양 119안전센터	경산시 장산로 143	소방경	경산시 삼남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삼북동, 중방동, 남방동, 내 동, 여천동, 유곡동, 신천동, 점촌동, 평산동, 사 동, 삼풍동, 계양동 일원
	중 산 119안전센터	경산시 펜타힐즈4로 1	소방경	경산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중산동, 정평동, 남천면 일원
	하 양 119안전센터	경산시 하양읍 대곡로 142	소방경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진 량 119안전센터	경산시 진량읍 공단2로 72	소방경	경산시 진량읍 일원
	자 인 119안전센터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5-11	소방경	경산시 자인면, 남산면, 용성면 일원
의성소방서	봉 양 119안전센터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소방경	의성군 봉양면, 안평면, 신평면, 비안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일원
	금 성 119지역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3	-	의성군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일원
	의 성 119안전센터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87	소방경	의성군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점 곡 119지역대	의성군 점곡면 명고길 657	-	의성군 옥산면, 점곡면 일원
	안 계 119안전센터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00	소방경	의성군 안계면, 안사면,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구천면 일원
	다 인 119지역대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2846	-	의성군 다인면 일원
청송소방서	청 송 119안전센터	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	소방경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안덕면 ,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일원
	주 왕 산 119지역대	청송군 주왕산면 부동로 862	-	청송군 주왕산면 일원
	진 보 119안전센터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46	소방경	청송군 진보면, 파천면 일원
	안 덕 119안전센터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252외 1필지	소방경	청송군 안덕면, 현동면, 현서면 부남면, 일원
	현 서 119지역대	청송군 현서면 금성현서로 2487	-	청송군 현서면 일원
영양소방서	영 양 119안전센터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	소방경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일원
	수 비 119지역대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82-6	-	영양군 수비면 일원
	입 암 119안전센터	영양군 입암면 입암로 153	소방경	영양군 입암면, 석보면, 청기면 일원
영덕소방서	영 덕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소방경	영덕군 영덕읍, 달산면, 지품면 일원
	지 품 119지역대	영덕군 지품면 신안1길 5-1	-	영덕군 지품면 일원
	강 구 119안전센터	영덕군 강구면 강산로 38	소방경	영덕군 강구면, 남정면 일원
	영 해 119안전센터	영덕군 영해면 창수영해로 481	소방경	영덕군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축산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청도소방서	청 도 119안전센터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소방경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일원
	화 양 119지역대	청도군 화양읍 범곡길 11	-	청도군 화양읍 일원
	풍 각 119안전센터	청도군 풍각면 송서로 64	소방경	청도군 각남면,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일원
	금 천 119안전센터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363	소방경	청도군 금천면, 운문면, 매전면 일원
고령소방서	대가야 119안전센터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소방경	고령군 일원(제외 : 다산면, 성산면)
	개 진 119지역대	고령군 개진면 회천로 563	-	고령군 개진면, 우곡면 일원
	다 산 119안전센터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506	소방경	고령군 다산면, 성산면 일원
	성 산 119지역대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93	-	고령군 성산면 일원
성주소방서	성 주 119안전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소방경	성주군 성주읍,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일원
	초 전 119지역대	성주군 초전면 대고로 52	-	성주군 벽진면, 초전면 일원
	가 천 119안전센터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 3	소방경	성주군 수륜면, 가천면, 금수강산 면, 대가면 일원
	선 남 119안전센터	성주군 선남면 도성3길 39-17	소방경	성주군 선남면, 용암면 일원
칠곡소방서	기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소방경	칠곡군 왜관읍 일부(제외 : 금산리 · 금남리 · 삼청리 · 낙산리), 기산 면 일원
	왜 관 119안전센터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94	소방경	칠곡군 왜관읍 일부(금산리 · 금남리 · 삼청리 · 낙산리) 일원
	북 삼 119안전센터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46	소방경	칠곡군 북삼읍, 약목면 일원
	약 목 119지역대	칠곡군 약목면 북성10길 15	-	칠곡군 약목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석 적 119안전센터	칠곡군 석적읍 유학로 140	소방경	칠곡군 석적읍 일원
	지 천 119안전센터	칠곡군 지천면 신리 산27번지	소방경	칠곡군 지천면 일원
	동 명 119안전센터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216	소방경	칠곡군 동명면 일원
	가 산 119안전센터	칠곡군 가산면 다부원1길 57	소방경	칠곡군 가산면 일원
예천소방서	예 천 119안전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소방경	예천군 예천읍, 감천면, 보문면 일원
	용 문 119안전센터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19	소방경	예천군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유천면 일원
	지 보 119안전센터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247	소방경	예천군 지보면, 풍양면, 개포면, 용궁면 일원
	풍 양 119지역대	예천군 풍양면 낙상1길 60-4	-	예천군 풍양면 일원
	용 궁 119지역대	예천군 용궁면 용궁시장길 7	-	예천군 용궁면 일원
	도 청 119안전센터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19	소방경	예천군 호명읍 일원
봉화소방서	봉 화 119안전센터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3길 152	소방경	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상운면 일원
	춘 양 119안전센터	봉화군 춘양읍 소천로 22	소방경	봉화군 춘양면, 법전면, 소천면, 석포면 일원
	석 포 119지역대	봉화군 석포면 석포로 168	-	봉화군 석포면 일원
	명 호 119안전센터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46	소방경	봉화군 명호면, 재산면, 봉성면 일원
	재 산 119지역대	봉화군 재산면 재산로 483	-	봉화군 재산면 일원

서 별	명 칭	위 치	센터장직급	관 할 구 역
울진소방서	울 진 119안전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소방경	울진군 울진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일원
	북 면 119안전센터	울진군 북면 장터길 69	소방경	울진군 북 면 일원
	온 정 119안전센터	울진군 온정면 백암온천로 1315	소방경	울진군 온정면 일원
	죽 변 119안전센터	울진군 죽변면 하죽로 1841	소방경	울진군 죽변면 일원
	후 포 119안전센터	울진군 후포면 실배길 28-1	소방경	울진군 후포면, 평해읍, 기성면 일원
	기 성 119지역대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741	-	울진군 기성면 일원

[별표 4]

119구조구급센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6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구미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미시 공단동 209-1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영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상주시 경상대로 3203-1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청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청송군 청송읍 굿바들길 19	청송군 일원
영양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188	영양군 일원
영덕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봉화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봉화군 내성천3길 152	봉화군 일원
울진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별표 4의2] 〈신설〉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등의 위치(제46조의3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하부조직
119특수대응단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길86번길 19-59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환동해특수구조대
	경상북도 구미시 상림로 45	서부특수구조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19	북부특수구조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보좌기관) ① (생략) ② 행정부지사 밑에 <u>감사관 및 미래전략기획단을 둔다.</u> ③ (생략) ④ 정책·재정·정무 및 저출생여성정책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u>정책특별보좌관·재정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u>을 두며, <u>정책특별보좌관·재정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u>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u>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감사관</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정책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u>을 ----- ----- <u>정책특별보좌관·정무특별보좌관·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u>은 ----- -----. 제6조(대변인) ① <u>대변인에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을 둔다.</u> ② <u>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홍보담당관·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③ 제2항 ----- ----- ----- ----- -----.

현행	개정안
③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4.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공포에 관한 사항 5. 도정 홍보물 제작 6. 인터넷 방송·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 8. 도정 연설문집 발간 9.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 10.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 등 11.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7호에서 제11호까지 신설] 12. 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삭 제〉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보발간 및 공고·고시·공포에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조(감사관) ① ~ ② (생략)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 8. (생략) <u>〈신 설〉</u> 9. ~ 17. (생략) <u>제8조(미래전략기획단) ① 미래전략기</u>	<u>관한 사항</u> 4. <u>도정 홍보물 제작</u> 5. <u>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u> 6. <u>도정 연설문집 발간</u> 7. <u>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u> ⑤ <u>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u> 2. <u>인터넷 방송·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3. <u>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u> 4. <u>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 등</u> 5. <u>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u> 6. <u>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미디어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u><u>〈신설 2022. 12.</u> 제7조(감사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u>집단갈등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10. ~ 18. (현행 제9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u>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② 삭제 ③ <u>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u> 1. <u>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u> 2. <u>도지사 공약사항 총괄·조정</u> 3. <u>그 밖에 도정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u> 제9조(경제혁신추진단) ① (생략) ② <u>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u> 1. ~ 2. (생략) 3. <u>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u> <u>〈신설〉</u>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5. · 6. (생략)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② (생략) ③ <u>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제9조(경제혁신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u>정책금융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u>경제특구·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u> 7. <u>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지정</u> 8. <u>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운영·관리</u> 9. · 10.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2. <u>주요 전략과제 기획·조정</u>
2. ~ 3. (생략)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10. 도지사 <u>지시사항</u> 종합관리 및 평가	10. ---- <u>지시사항·공약사항</u> ----
11. ~ 24. (생략)	11. ~ 2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4차산업</u> 선도기업 보안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8. <u>4차산업혁명</u> ----- -----
9. <u>정보통신망</u> 운영에 관한 사항	9. <u>정보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u> ----- -----
10. <u>통신시설 및 행정방송</u> 운영에 관한 사항	10. <u>정보통신공사업 민원 및 영상·방송중계</u> -----
<u><신설></u>	11. <u>공공데이터 수집·개방 및 활용</u>
<u><신설></u>	12. <u>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u>
<u><신설></u>	13. <u>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u>
<u><신설></u>	14. <u>통계·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u>
<u><신설></u>	15. <u>통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1. (생략) 제13조의2(안전행정실에 두는 과) ① 안전행정실에 <u>안전정책과·행정지원과·재난관리과·새마을봉사과·회계관리과·인재복지과</u> 및 위기관리대응센터를 둔다. ② 실장은 <u>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행정지원과장·재난관리과장·새마을봉사과장·회계관리과장 및 위기관리대응센터</u>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재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 ④ (생략)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신설〉 9. ~ 19. (생략)	1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7.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18.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 19. 지역통계의 품질관리 20.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 21.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3조의2(안전행정실에 두는 과) ① ----- <u>안전정책과·행정지원과·사회재난과·자연재난과·새마을봉사과·회계관리과·인재복지과</u> -----. ② -----, <u>안전정책과장·행정지원과장·사회재난과장·자연재난과장·새마을봉사과장·회계관리과장</u>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u>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u> 10. ~ 20. (현행 제9호부터 제19호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⑥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1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1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삭 제〉

현행	개정안
1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 2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 등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시행 2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 23.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 24.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사회·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현행	개정안
〈신설〉	<u>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u> <u>1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및 시행</u> <u>1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u> <u>13. 그 밖의 사회재해에 관한 사항</u> <u>⑧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u> <u>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u> <u>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u> <u>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u> <u>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u> <u>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u> <u>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u> <u>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u> <u>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u> <u>1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기) 등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u> <u>11.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u> <u>12.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⑦ (생략) ⑧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규〉 10. (생략) ⑨ ~ ⑩ (생략) 제13조의3(저출생극복본부에 두는 과) ① 저출생극복본부에 저출생대응정책과·아이돌봄과·여성가족과 및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저출생대응정책과장 및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 및 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저출생 정책 총괄 조정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13. <u>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u> 14. <u>그 밖의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u>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u>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⑪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3. <u>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 4. <u>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u> 5. <u>부자·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6. <u>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u> 7. <u>K-저출생 극복 시범모델 발굴</u> 8. <u>경북형 돌봄 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9. <u>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u> 10. <u>범정부 저출생 극복 법·제도 개선 등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u> 11. <u>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u> 12. <u>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u> 13. <u>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u> 14. <u>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5. <u>공공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6. <u>그 밖에 저출생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u> ④ <u>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현행	개정안
2. <u>아이돌봄시설 운영·지원</u> 3. <u>아이돌봄시설 지도·관리·점검</u> 4. <u>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u> 5. <u>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6. <u>보육법인·단체 등 관리</u> 7. <u>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8. <u>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u> 9. <u>보육 지원</u> 10. <u>어린이집 지도·감독·평가</u> 11. <u>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u> 12. <u>K-보듬 아이돌봄 총괄</u> 13. <u>K-보듬 아이돌봄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u> 14. <u>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5. <u>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u> ⑤ <u>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u> 2. <u>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u> 3. <u>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u> 4. <u>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u> 5. <u>여성의 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u> 6. <u>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u> 7. <u>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u>	

현행	개정안
<u>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u> 8. <u>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u> 9. <u>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u> 10. <u>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u> 11. <u>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u> 12. <u>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u> 13. <u>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u> 14. <u>그 밖에 여성·가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u> ⑥ <u>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u> 2. <u>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u> 3. <u>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4. <u>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아동수당 지원</u> 6. <u>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7. <u>청소년 보호·육성</u> 8. <u>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 9. <u>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10. <u>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u> 11. <u>청소년 부모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u> 12. <u>늘봄학교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u> 13. <u>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u> 14. <u>그 밖에 아동 및 교육·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u> 제14조(지방시대정책국에 두는 과) ① <u>지방시대정책국에 지방시대정책과·대학정책과·청년정책과 및 외국인공동체과를 둔다.</u> 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시대정책과장·대학정책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③ <u>지방시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방시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2. <u>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u> 3. <u>균형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4. <u>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u>	〈삭 제〉

현행	개정안
5. <u>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u> 6. <u>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7. <u>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u> 8. <u>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9. <u>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u> 10. <u>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11. <u>그 밖에 지방시대 정책에 관한 사항</u> ④ <u>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대학정책에 관한 사항</u> 2. <u>경북학숙 운영·지원</u> 3. <u>평생교육 기획·조정</u> 4. <u>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5. <u>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대학정책, 평생교육 및 지역인재육성 등에 관한 사항</u> ⑤ <u>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u> 2. <u>청년 정책·시책개발에 관한 사항</u> 3. <u>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u> 4. <u>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u>	

현행	개정안
5. 청년창업가 육성·지원 및 재창업자 지원 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 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⑥ 외국인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3. 외국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4.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7.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8. 그 밖에 외국인·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14조의2(식품한류산업국에 두는 과) ① 식품한류산업국에 식품정책과·식품산업과·식품한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산업과장·식품한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현 행	개 정 안
	<u>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u>③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식품한류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 <u>2. 식품안전·식품진흥에 관한 사항</u> <u>3.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u> <u>4.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u> <u>5.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u> <u>6. 지역 식품업소 육성·지원</u> <u>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u> <u>8.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u> <u>9.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u> <u>10.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u> <u>11.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관리</u> <u>13.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u> <u>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④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기반 조성</u> <u>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u>

현행	개정안
〈신설〉	<u>에 관한 사항</u> 3. <u>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u> 4. <u>전통식품 산업 육성</u> 5. <u>식품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u> 6. <u>푸드테크·외식산업에 관한 사항</u> 7. <u>그 밖에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u> ⑤ <u>식품한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식품관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2. <u>식품관광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u> 3. <u>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u> 4. <u>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u> 5. <u>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u> 6. <u>그 밖에 식품관광·한류 정책에 관한 사항</u> <u>제14조의3(지방정부전략국에 두는 과)</u> ① <u>지방정부전략국에 지방정부정책과·저출생대책과·대학청년과·아이돌봄과·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를 둔다.</u> ② <u>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정부정책과장·저출생대책과장·대학청년과장·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u>

현행	개정안
	<u>기관으로 임명한다.</u> <u>③ 지방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2.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u> <u>3.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u> <u>4.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5.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시행</u> <u>6.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u> <u>7.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u> <u>8.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u> <u>9. 광역비자·지역특화형 비자에 관한 사항</u> <u>10. 외국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u> <u>11.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문화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12.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u> <u>13.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사항</u> <u>14. 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u> <u>15.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u>

현행	개정안
	<u>한 사항</u> 16. <u>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u> 17. <u>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u> ④ <u>저출생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인구·저출생대책 정책 총괄 조정</u> 2. <u>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u> 3. <u>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u> 4. <u>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u> 5. <u>부자·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6. <u>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u> 7. <u>저출생 극복 선도사업 발굴 추진</u> 8. <u>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u> 9. <u>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u> 10. <u>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u> 11. <u>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u> 12. <u>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3. <u>공공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u>

현행	개정안
	<u>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4.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u> <u>15.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u>16.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u> <u>17. 그 밖에 저출생대책 정책에 관한 사항</u> <u>⑤ 대학청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 <u>1.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u> <u>2. 경북학숙 운영·지원</u> <u>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u> <u>4. 청년 정책·시책개발에 관한 사항</u> <u>5.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u> <u>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u> <u>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u> <u>9. 평생교육 기획·조정</u> <u>10.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u> <u>11. 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u>12. 그 밖에 대학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u> <u>⑥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u>

현 행	개 정 안
	<u>한다.</u> <u>1.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u>2. 경북형 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u>3. 국가 돌봄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u> <u>4. 아이돌봄시설 운영·지원</u> <u>5. 아이돌봄시설 지도·관리·점검</u> <u>6.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u> <u>7.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u>8. 보육법인·단체 등 관리</u> <u>9.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u>10.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u> <u>11. 영유아 보육 지원</u> <u>12. 어린이집 지도·감독·평가</u> <u>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u> <u>14. 경북형 K-보듬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u> <u>15. K-보듬 아이돌봄 사업 운영 및 확대</u> <u>16. 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7. 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u> ⑦ <u>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u> <u>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u> <u>3.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u>

현 행	개 정 안
	4.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 5. 여성의 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6. 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 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 11.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3. 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15.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6. 그 밖에 여성가족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⑧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 2.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4.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수당 지원

현행	개정안
	6. <u>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u> 7. <u>청소년 보호·육성</u> 8. <u>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u> 9. <u>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u> 10. <u>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u> 11. <u>청소년 부모 마을 구성에 관한 사항</u> 12. <u>늘봄학교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u> 13. <u>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u> 14. <u>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u> 15. <u>그 밖에 아동 및 교육·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u> 〈삭 제〉
제15조(메타AI과학국에 두는 과) ① 메타AI과학국에 <u>디지털메타버스과·미래첨단산업과·AI데이터과·소재부품산업과 및 바이오생명산업과를 둔다.</u> ② 국장은 <u>지방부이사관으로, 디지털메타버스과장·AI데이터과장·소재부품산업과장 및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첨단산업과장은 지방</u>	

현행	개정안
<u>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u>③ 디지털메타버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 <u>1. 경북 디지털 대전환 기본계획 수립</u> <u>2.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위원회 운영</u> <u>3.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4. 4차 산업혁명 전략·실행위원회 운영</u> <u>5.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기획 및 사업화 지원</u> <u>6. 디지털 트윈 혁신서비스 제조산업 적용 실증에 관한 사항</u> <u>7. 지역SW산업성장지원에 관한 사항</u> <u>8. 메타버스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u> <u>9.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10.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화제 운영</u> <u>11.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u> <u>12.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 및 운영 지원</u> <u>13.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u> <u>14.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u> <u>15.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u> <u>16.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u>17.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지정</u> <u>18.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 특구 운영·관리</u> <u>19.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0. 그 밖에 디지털메타버스 진흥에 관한 사항</u> <u>④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 <u>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u> <u>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u> <u>3. 기초과학 육성·지원</u> <u>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원</u> <u>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학문화 확산</u> <u>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u> <u>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u> <u>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추진단 운영</u> <u>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지원</u> <u>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u> <u>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추진단 운영</u>	

현행	개정안
<u>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u> <u>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지원</u> <u>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u> <u>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u> <u>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계 조성 추진</u> <u>17. 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u> <u>18. 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u> <u>19. 그 밖에 미래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u> <u>⑤ AI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AI 산업 발전계획 수립</u> <u>2. 국내·외 AI 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협력사업 발굴</u> <u>3. 홀로그램 기술개발 지원</u> <u>4.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u>5.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지능정보기술육성에 관한 사항</u> <u>6. 통계·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u> <u>7. 통계·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u>	

현행	개정안
8.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9. 공공데이터 수집·개방 및 활용 10.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11.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13.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 14. 지역통계의 품질관리 15.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 16. 블록체인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17. 블록체인 공공분야 시범사업·확산사업 발굴 18. 그 밖에 AI데이터 진흥에 관한 사항 ⑥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산업 육성 2. 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 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4.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 5.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6.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7.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 8.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9. 기계부품산업 육성 10. 섬유탄소산업 육성 11. 뿌리산업 육성 12. 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	

현행	개정안
13. 방위산업 육성 14.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⑦ 바이오생명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 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 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 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 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 6. 재활·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 8.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 지원 9.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푸드테크 및 외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제15조의3(과학산업국에 두는 과) ① 과학산업국에 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산업과·첨단산업과·소재부품산업과·바이오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공지능

현행	개정안
	<u>능정책과장 · 인공지능산업과장 · 소재부품산업과장 · 바이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u>③ 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u> <u>1.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u> <u>2. 인공지능 관련 법령 대응 및 중앙부처 협력사업 발굴</u> <u>3.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u> <u>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u> <u>5. 인공지능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u> <u>6.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 · 집적단지 구축</u> <u>7.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u> <u>8.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u> <u>9. (재)경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u> <u>10.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11. 산 · 학 · 연 협력사업 추진</u> <u>12. K-과학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u>13.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u> <u>④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및 지역 산업융합 촉진 지원</u> <u>2. 인공지능·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u> <u>3. 인공지능·소프트웨어기술 도입 및 활용 확산</u> <u>4.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u> <u>5. 4차 산업혁명 전략·실행위원회 운영</u> <u>6.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u>7.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u>8.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u> <u>9. 디지털 트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u>10. 가상융합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u> <u>1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12. 경상북도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운영</u> <u>13.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u> <u>14. XR·AR·MR 디바이스 개발지원</u> <u>15.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16. 그 밖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 한다. 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 지 조성 3. 기초과학 육성·지원 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원 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 학문화 확산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 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 전지) 추진단 운영 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 성지원 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 체) 추진단 운영 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지원 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 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 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

현행	개정안
	<u>계 조성 추진</u> 17. <u>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u> 18. <u>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u> 19. <u>그 밖에 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u> ⑥ <u>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역특화산업 육성</u> 2. <u>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u> 3. <u>시군구 연고산업 육성</u> 4. <u>공무원 직무발명 처분·관리 및 보상</u> 5. <u>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u> 6. <u>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u> 7. <u>방위산업 육성</u> 8. <u>항공산업 육성</u> 9. <u>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u> 10. <u>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u> 11. <u>기계부품산업 육성</u> 12. <u>섬유탄소산업 육성</u> 13. <u>뿌리산업 육성</u> 14. <u>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u> 15. <u>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u> ⑦ <u>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u>

현행	개정안
	<u>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u> <u>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u> <u>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u> <u>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u> <u>6. 재활·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u> <u>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u> <u>8.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 지원</u> <u>9.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0. 첨단바이오·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u> <u>11.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u>
제16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 ② (생략) ③ 경제정책노동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2.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2.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u>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u>5.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u> <u>6.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u>

현행	개정안
<u>〈신설〉</u> 4.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④ (생략) ⑤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 6. (생략) 7. 소상공인 지원 <u>계획</u>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소비자권익증진 <u>시책</u>수립 및 추진	7. 청년창업가 육성·지원 및 재창업자 지원 8. ~ 9.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10. 노동감독 권한 위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방물가 안정 관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 11.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u>〈삭제〉</u> 12. ----- <u>시책</u> 수립 ---

현행	개정안
〈신설〉 9. 시장 활성화 종합기획 및 추진 10. 시장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생경제 <u>활성화</u>에 관한 사항 ⑧ ~ ⑨ (생략) 제16조의2(공항투자본부에 두는 과) ① <u>공항투자본부에 투자유치단·공항추진과·항공산업과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u>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투자유치단장·공항추진과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항공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③ ~ ④ (생략) ⑤ <u>공항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7. (생략) 〈신설〉 〈신설〉 8. (생략) ⑥ <u>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항공산업 기업 유치·육성 종합 계</u>	13. 특수거래분야 관리 및 지도 점검 〈삭제〉 〈삭제〉 14. ----- <u>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u>---- ⑥ ~ ⑦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6조의2(공항투자본부에 두는 과) ① ----- <u>투자유치단·공항추진단 및 -----.</u> ② -----, <u>투자유치단장·공항추진단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 임명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u>공항추진단장</u>-----. 1. ~ 7. (현행과 같음) 8. <u>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u> 9. <u>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항</u>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획 수립</u> 2. <u>항공MRO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 지원</u> 3. <u>항공레저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u> 4. <u>철충교역 연계 지역산업 항공산업 전환 컨설팅</u> 5. <u>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u> 6. <u>항공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 등 기획 및 개최</u> 7. <u>미래항공교통(AAM) 육성 종합계획 수립</u> 8. <u>AAM 관련 산업 구축 및 기업 유치 지원</u> ⑦ (생략) 제18조(농축산유통국에 두는 과) ① <u>농축산유통국에 농업대전환과·농식품유통과·스마트농업혁신과·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u>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농업대전환과장·농식품유통과장·스마트농업혁신과장 및 축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u> ③ 농업대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농축산유통국에 두는 과) ① ---- ----- <u>농업대전환과·농업유통과·스마트농업혁신과·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복지과</u>-----. ② -----, <u>농업대전환과장·농업유통과장·스마트농업혁신과장</u> ----- ----- <u>동물방역복지과장</u>-----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장한다. 1. ~ 2. (생략) <u>3. 도·농 상생교류촉진 사업 추진</u> 4. ~ 13. (생략) <u>1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u> <u>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u> 16. ~ 2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 ④ <u>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략) <u>7.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u> 8. (생략) <u>9. 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u> <u>10. 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u> <u>11.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지원</u> <u>12.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 기반 조성</u> <u>13. 전통식품 산업 육성</u>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6. ~ 26. (현행과 같음) <u>27.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u> <u>28. 곤충·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29.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30. (현행 제27호와 같음) ④ <u>농업유통과장</u>-----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14. ~ 19. (생략)	14. ~ 19. (현행과 같음)
<u>〈신설〉</u>	<u>20. 도·농 상생 교류촉진 사업 추진</u>
<u>〈신설〉</u>	<u>2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u>
<u>〈신설〉</u>	<u>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u>
<u>〈신설〉</u>	<u>23.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u>
<u>〈신설〉</u>	<u>24. 귀농·귀촌에 관한 사무</u>
<u>〈신설〉</u>	<u>25. 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u>
20. 그 밖에 FTA 대응, <u>농식품 유통</u> 에 관한 사항	26. ----- <u>농업</u> ----- -----
⑤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u>친환경·스마트농업육성 종합 발전 계획 수립</u>	1. <u>스마트농업육성</u> ----- -----.
2. <u>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에 관한 사항</u>	<u>〈삭제〉</u>
3. <u>곤충·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삭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직접지불제(쌀소득, 조건불리,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사업</u>	5. -----(<u>공익증진, 전략작물, 경관보존</u>) -----
6. ~ 11. (생략)	6. ~ 11. (현행과 같음)
12. <u>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u>	<u>〈삭제〉</u>
13. <u>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u>	<u>〈삭제〉</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5. <u>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삭 제〉
16. ~ 25. (생략)	16. ~ 25. (현행과 같음)
26. 그 밖에 <u>친환경·스마트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u>	26. ----- <u>스마트농업</u>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u>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동물방역복지과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 위생 안전성 <u>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u>	4. ----- <u>관리</u>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7. 가축 <u>매몰지 관리</u> 에 관한 사항	7. --- <u>매몰지 및 가축질병 피해보상</u> -----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u>
〈신설〉	11. <u>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u>
10. ~ 12. (생략)	12. ~ 14.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제19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 ② (생략)	제19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기획, 홍보, <u>교육, 환경 분쟁</u> <u>조정</u> 에 관한 사항	2. ----- <u>교육</u> ----- -----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13. <u>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u>〈삭제〉</u>
14. ~ 17. (생략)	14. ~ 17. (현행과 같음)
18. 야생동물 <u>생태공원·구조센터</u> 조성·관리	18. ----- <u>생태공원·치료센터</u> ----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환경보전에 관한 사항</u>
<u>〈신설〉</u>	9. <u>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u>
8. ~ 10. (생략)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복지건강국에 <u>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건정책과 및 공공의료과</u> 를 둔다.	제20조(복지건강국에 두는 과) ① ----- --- <u>사회복지과·통합돌봄과·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건정책과 및 공공의료과</u>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및 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u>장애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서기관</u>	② ----- -----, <u>통합돌봄과장·장애인복지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u> -----

현행	개정안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u> 지원에 관한 사항	3. <u>(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부랑인·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u>	5. <u>노숙인 등 시설</u> -----
6. <u>사회복지법인(정신질환자·부랑인</u> <u>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u>	6. <u>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u>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u>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인·허가</u> <u>및 지도 감독</u>	14. <u>복지건강국 소관 사단법인 등 설</u> <u>립 허가</u>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u>위기청년(가족돌봄·고립은둔) 지</u> <u>원 사업</u>
16. (생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신설〉	④ <u>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u> <u>한다.</u>
	1. <u>통합돌봄 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추</u> <u>진</u>
	2. <u>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운영에 관</u> <u>한 사항</u>
	3. <u>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및 운</u> <u>영 지원에 관한 사항</u>
	4. <u>통합돌봄 관련 민관기관 협력체계</u> <u>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5. <u>통합돌봄 관련 교육 기획 및 시행</u> 6. <u>통합돌봄 연계사업(보건·의료·요양·돌봄) 시행 지원</u> 7. <u>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u> 8. <u>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u> 9. <u>정신요양·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정신응급 대응에 관한 사항</u> 11. <u>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u> 12. <u>재난정신건강심리지원</u> 13. <u>외로움 대책 수립 및 시행</u> 14. <u>치매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15. <u>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u> 16. <u>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17. <u>치매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사항</u> 18. <u>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19. <u>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20. <u>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리</u> 21. <u>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22. <u>자살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u> 23. <u>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u> 24. <u>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u> 25. <u>그 밖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④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3. 노인복지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u> 4. ~ 10. (생략) <u>11. 할매할배의 날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u> <u>12. 할매할배의 날 추진관련 정부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 <u>13.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u> 14. (생략) ⑤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u>3. 장애인 복지시설(생활시설, 공동, 단기, 주간) 운영 지원</u> <u>4. 사회복지법인(장애인관련) 설립허가 및 관리</u> 5. ~ 10.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3. 노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u> 4.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3. 장애인 거주시설(거주, 단기, 공동)</u> ----- <u>4.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u> 5. ~ 10. (현행과 같음) <u>11. 장애인 건강권 관련 사항</u> <u>1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u> <u>1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⑥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14.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u> <u>15.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u> <u>16.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u>17. 식품위생 및 약무행정의 종합기획</u> <u>18. (생략)</u> <u>19.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u> <u>20.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u> <u>21.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u> <u>22. 지역 식품업소 육성·지원</u> 23. ~ 25. (생략) <u>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지원 및 운영</u> <u>27.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u> <u>28.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u> <u>29.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u> <u>30.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u>3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u>	⑦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17. 약무행정의 종합기획</u> <u>18. (현행과 같음)</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23. ~ 25.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u>영관리</u>	<u>〈삭 제〉</u>
<u>〈신 규〉</u>	32. <u>의료기기·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u>
32. 그 밖에 <u>보건정책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u>	33. ---- 보건정책 -----
<u>⑦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u>〈신 규〉</u>	15. <u>지방의료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5. ~ 18. (생략)	16. ~ 19. (현행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u>〈신 설〉</u>	20. <u>필수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1. <u>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2. <u>지역응급의료계획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3. <u>응급의료 취약지 강화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4. <u>응급환자 이송·관리·감독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5. <u>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19. 그 밖에 <u>감염병관리 및 공공·응급의료에 관한 사항</u>	26. ----- 공공·응급의료 및 감염병관리에 -----

현행	개정안
제2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지역개발과·도로철도과·건축디자인과·토지정보과 및 <u>신도시조성지원과</u> 및 <u>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u> 을 둔다.	제2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 ----- ----- <u>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u> -----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u>도시계획과장</u> · <u>지역개발과장</u> · <u>건축디자인과장</u> · <u>토지정보과장</u> 및 <u>신도시조성지원과장</u> 및 <u>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u>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 <u>도시계획과장</u> · <u>지역개발과장</u> · <u>건축디자인과장</u> · <u>토지정보과장</u> ----- ----- ----- -----.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신설〉</u>	9. <u>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8. ~ 13. (생략)	10. ~ 15. (현행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④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u>	<u>〈삭제〉</u>
3. ~ 15. (생략)	3. ~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 ⑦ (생략) ⑧ <u>신도시조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u> 2. <u>도청신도시 유관기관·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u> 3. <u>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u> 4. <u>도청신도시 내 공원 녹지 등 경관 조성계획 수립</u> 5. <u>북부권 발전전략 수립·시행</u> 6. <u>그 밖에 도청신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u> ⑨ (생략) 제22조(APEC준비지원단에 두는 과) ① <u>APEC준비지원단에 APEC유산과 및 APEC시설과를 둔다.</u> ② <u>지원단장은 지방이사관으로, APEC유산과 및 APEC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u> ③ <u>APEC유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APEC 백서 발간 및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u> 2. <u>APEC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u> 3. <u>포스트 APEC 레거시 창출 및 신규 과제 발굴</u>	⑤ ~ ⑦ (현행과 같음) 〈삭제〉 ⑨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4. APEC 개최 성과 공유 및 홍보 5. 그 밖에 APEC준비지원단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APEC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포스트 APEC 시설 조성·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시·체험 등 참여프로그램 및 문 화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3. APEC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정 비 및 개선 4. 그 밖에 APEC시설에 관한 사항 제26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농업기술 원에 <u>총무과·연구개발국</u> 및 농촌지 원국을 둔다. ② <u>총무과장</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 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u>총무과</u>) <u>총무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29조(농촌지원국) ① ~ ② (생략) ③ 기획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 6. (생략)	제26조(하부조직) ① ----- -- <u>운영지원과·연구개발국</u> ----- -----. ② <u>운영지원과장</u>----- ----- ----- -----. 제27조(<u>운영지원과</u>) <u>운영지원과장</u>----- -----.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농촌지원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7. (생략)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신설〉 〈신설〉 ⑤ 농업테크노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 8.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 9. (생략) 제33조(하부조직) 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u>총무과 및 감염병연구부·식의약연구부·환경연구부</u>를 둔다. ② <u>총무과장은</u>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u>감염병연구부장과</u> <u>식의약연구부장은</u> 지방보건연구관으로, <u>환경연구부장은</u>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u>총무과</u>) <u>총무과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현황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 11.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 ⑤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9. (현행과 같음) 제33조(하부조직) ① ----- ----- <u>연구지원과 및 감염병연구부·식의약연구부·기후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u>-----. ② <u>연구지원과장</u>----- ----- <u>감염병연구부장은</u> 지방보건연구관으로, <u>기후환경연구부장은</u> <u>지방환경연구관으로</u>, <u>식의약연구부장과</u> <u>물환경연구부장은</u> <u>지방보건연구관 또는</u> -----. 제34조(<u>연구지원과</u>) <u>연구지원과장</u>-----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제35조(감염병연구부) ① ~ ④ (생략)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모기매개</u>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6. ~ 8. (생략) 제36조(식의약연구부) ① ~ ④ (생략) ⑤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수산물 <u>잔류동물의약품</u> 검사 6. ~ 7. (생략) 제36조의2(환경연구부) ① <u>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대기질평가과·산업대기과·생활환경과·산업폐수과·먹는물검사와 및 토양폐기물과를 둔다.</u> ② <u>수계조사과장·대기질평가과장·산업대기과장·생활환경과장 및 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와 및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u> ③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1. ~ 5. (현행과 같음) 제35조(감염병연구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모기 및 진드기 매개</u> ----- 6. ~ 8. (현행과 같음) 제36조(식의약연구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잔류동물용의약품</u> ---- 6. ~ 7.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u>장한다.</u> <u>1. 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 조정</u> <u>2. 수자원 안전성 검사</u> <u>3. 하천 · 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u> 〈개정 2025. 2. 27.〉 <u>4. 하천수의 유해화학 · 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u> 〈개정 2025. 2. 27.〉 <u>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u> 〈개정 2025. 2. 27.〉 <u>④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u> <u>2.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u> <u>3.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u> <u>4.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u> <u>5.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u> <u>6.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u> <u>⑤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u> <u>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u> <u>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u> <u>4. 대기 및 악취 검사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u> <u>⑥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u>	

현행	개정안
<u>장한다.</u> 1. <u>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u> 2. <u>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u> 3. <u>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u> 4. <u>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u> 5. <u>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u> 6. <u>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u> ⑦ <u>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산업장 폐수 검사</u> 2. <u>오수·분뇨·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u> 3. <u>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u> 4. <u>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u> 5. <u>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u> 6. <u>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u> ⑧ <u>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먹는물, 먹는 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u> 2. <u>환경미생물 검사</u> 3. <u>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신</u>	

현행	개정안
<u>설 2025. 2. 27.)</u>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2. 27.) 5. 먹는물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개정 2025. 2. 27.) 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25. 2. 27.) ⑨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 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 3. 폐기물처분시설의 관리기준 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 관리기준 검사 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경 영향 조사·연구 [본조신설 2022. 12. 29.] [제36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로 이동 2025. 7. 7.] <신 설>	제36조의3(기후환경연구부) ① 기후환경 연구부에 대기질평가과·산업대기과·생활환경과·토양폐기물과를 둔다. ② 대기질평가과장·산업대기과장·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

현행	개정안
	<u>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u> <u>③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기후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u> <u>2.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u> <u>3.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u> <u>4.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u> <u>5.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u> <u>6.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u> <u>7.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u> <u>④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u> <u>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u> <u>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u> <u>4. 대기 및 악취 등에 대한 조사연구</u> <u>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u> <u>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u> <u>3.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u> <u>4.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u> <u>5. 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u>

현행	개정안
〈신설〉	6.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 ⑥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 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 3. 폐기물처분(소각)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 관리기준 검사 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 경 영향 조사·연구 제36조의4(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 부에 수계조사과·산업폐수과·먹는 물검사과를 둔다. ② 수계조사과장·산업폐수과장은 지 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③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 · 조정 2. 수자원 안전성 검사 3. 하천·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현행	개정안
제38조(북부지원) ① 북부지원에 <u>환경분석과 · 먹는물검사</u> 과 및 <u>안동농수산물</u> 검사소를 둔다.	4. 하천수의 유해화학 · 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 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장 폐수 검사 2.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 4. 농공단지 오 · 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 5. 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 6. 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 ⑤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 2. 환경미생물 검사 3. 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제38조(북부지원) ① ----- <u>환경분석과 · 수질분석과</u>----- -----.

현행	개정안
② 환경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 및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환경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 (생략) 2. 단위시설별 방류수검사 3. (생략) ④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검사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 3. (생략)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5. ~ 6. (생략) ⑤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수산물 잔류동물의약품 검사 6. ~ 7. (생략) 제41조(하부조직) ① ~ ③ (생략)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수질분석과장 ----- ----- -----. ③ (현행과 같음) 1. 북부지원 소관 업무 종합 기획·조정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단위 시설별 -----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수질분석과장----- -. 1. 먹는물 ----- 2. ~ 3. (현행과 같음) 4. 먹는물 ----- 5. ~ 6.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잔류동물용의약품 -- 6. ~ 7. (현행과 같음) 제41조(하부조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11. 가축개량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u>	<u>〈삭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119안전센터의 설치) 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119안전센터</u> 를 두며,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① ----- <u>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u> -----.
②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u>소속직원</u> 을 지휘·감독한다.	② ----- ----- <u>소속직원(해당 지역 119지역대를 포함한다)</u> 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및 <u>직할구조대</u> 를 둔다.	제46조의3(하부조직) ① ----- ----- <u>환동해특수구조대, 서부특수구조대, 북부특수구조대</u> 를 두며, 각 위치는 별표4의2와 같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직할구조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환동해·서부·북부특수구조대장-----</u> .
1. <u>특수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활동 및 지원</u>	1. <u>권역 내 특수재난 사고 초동 대응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u>
2. <u>화생방 테러 및 사고 대응 및 인명구조활동</u>	2. <u>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3. <u>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u>	3. <u>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시</u>

현행	개정안
<u>및 장비운영</u> 4. 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 5.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 6. 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제46조의5(하부조직) ① (생략) ② <u>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령으로 임명한다.</u> ③ ~ ⑤ (생략) 제47조의2(하부조직) ① 환동해지역본부에 <u>충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에너지산업국·해양수산업국·어업기술원 및 수산자원연구원을 둔다.</u> ② <u>충무민원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환동해전략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국장 및 해양수산업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어업기술원장 및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u>	<u>긴급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u> 4. <u>첨단 장비를 활용한 인명 탐색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5. <u>특수구조대원 인력·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6. <u>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u> 7. <u>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u> 8. <u>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9. <u>그 밖에 단장이 지시·위임하는 사항</u> 제46조의5(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u>과장 및 각 대장은</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하부조직) ① ----- <u>총괄운영관·에너지산업국·해양수산업국·어업기술원</u> ----- -----. ② <u>총괄운영관은 지방서기관으로</u>----- ----- ----- ----- ----- -----.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충무민원실) <u>충무민원실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13. ~ 14. (생략) 제47조의4(환동해전략기획단) <u>환동해전</u> <u>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환동해발전 정책 기획·조정</u> 2. <u>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u> <u>변경</u> 3. <u>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u> <u>사항</u> 4. <u>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u> <u>에 관한 사항</u> 5. <u>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u> 6. <u>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u> 7. <u>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u> 8. <u>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u> 9. <u>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u> 10. <u>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u> 11. <u>해양기술·장비 개발 및 신기술</u> <u>인증 지원</u>	제47조의3(충괄운영관) <u>충괄운영관----</u> <u>-----.</u> 1. ~ 12. (현행과 같음) <u>13. 환동해발전 정책 기획·조정</u> <u>14.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u> <u>변경</u> <u>15.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u> <u>한 사항</u> <u>16. ~ 17. (현행 제13호 및 제14호와</u> <u>같음)</u> <u>〈삭제〉</u>

현행	개정안
<u>12.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u> <u>13. 그 밖에 환동해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u> 제47조의5(에너지산업육) ① 에너지산업육에 에너지정책과·미래에너지수소과 및 <u>원자력산업과</u>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6. 에너지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u> 7. ~ 11. (생략) ⑤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에너지(<u>전력</u>)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략) 13. <u>수소연료전지</u>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u>〈신설〉</u> 14. ~ 17. (생략) ⑥ <u>원자력산업과</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7조의5(에너지산업육) ① ----- ----- - <u>원자력산업안전과</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 11.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전력계통</u>) ----- 12. (현행과 같음) 13. <u>수소</u> ----- ----- <u>14.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u> 15. ~ 18. (현행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⑥ <u>원자력산업안전과</u>장----- --.

현행	개정안
1. ~ 13. (생략) 제47조의6(해양수산물) ① 해양수산물에 <u>해양수산물·독도해양정책과</u> 및 <u>해양레저관광과</u>를 둔다. ② 해양수산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해양수산물</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u>신설</u>〉 2. ~ 3. (생략) ③ <u>해양수산물과장</u> 및 <u>독도해양정책과장</u>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u>해양레저관광과장</u>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④ <u>해양수산물과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수산물 유통·가공·수출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u> 6. <u>수산물 소비촉진·원산지표시·안전에 관한 사항</u> 7. <u>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에 관한 사항</u> 8. <u>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u>	1.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의6(해양수산물) ① ----- <u>해양수산물정책과·수산산업과·독도해양정책과</u>-----. ② (현행과 같음) 1. <u>해양수산물정책과</u>----- - 2. <u>수산산업과</u>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③ <u>해양수산물정책과장·수산산업과장</u> ----- ----- -----. ④ <u>해양수산물정책과장</u>-----.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현행	개정안
9. 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u>관한 사항</u>	<u>〈삭 제〉</u>
10. 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u>관한 사항</u>	<u>〈삭 제〉</u>
11. ~ 12. (생략)	12. ~ 13. (현행 제11호, 제12호와 같음)
<u>〈신 설〉</u>	14.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5. ~ 20. (생략)	15. ~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⑤ 수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지원 등 수 <u>산식품산업 육성</u>
	2. 수산물 소비촉진·원산지표시·안전 <u>에 관한 사항</u>
	3. 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보조에 <u>관한 사항</u>
	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u>에 관한 사항</u>
	5.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6.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
	7.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
	8.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9. 해양기술·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 <u>증 지원</u>
	10.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u>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⑥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 13. (생략) 제53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u>운영지원과·방역과·축산물검사와·질병진단과·조류질병과 및 정밀분석과</u>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방역과장·축산물검사와장·질병진단과장·조류질병과장 및 정밀분석과장</u>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인수공통전염병의 검진</u> 3. ~ 5. (생략)	12. <u>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u> 13. <u>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u> 14. 그 밖에 <u>해양수산업에 관한 사항</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u> 5. ~ 14. (현행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53조(하부조직) ① ----- <u>운영지원과·방역과·축산물검사와·질병진단과·조류질병과·정밀분석과 및 해외전염병대응과</u>-----. ② ----- <u>방역과장·축산물검사와장·질병진단과장·조류질병과장·정밀분석과장 및 해외전염병대응과장</u>-----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 ⑥ (생략)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가축전염병 예찰정보 수집 및 분석</u> ⑥ ~ ⑧ (생략) <u>〈신설〉</u>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u>해외전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신규 해외질병 방역대책수립</u> 2. <u>인수공통전염병 예찰 및 검진</u> 3. <u>럼피스킨, TSE, 모기매개질병 예찰</u> 4. <u>기타가축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u> 5. <u>기타 해외전염병 및 신규 질병에 관한 사항</u>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외한다) 밑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부조직(과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1.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행정개선 등에 관한 업무
2. 정책의 홍보,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② 시·도 본청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8.>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지구·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 ⑤ 시·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 ⑥ 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참고)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생략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송영례(054-880-2123)

"날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1. 정책기획관-8104(2026. 7.2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규칙정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 39명, 소방공무원 69명 등 총 정원 108명이 증가함에 따라 5년간 56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요비용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 보수 인상을 3.5%를 반영하여 추계된 바 추계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대결 2026. 7. 20. 예산총괄팀장 전결
지진태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278 (2026. 7. 20.) 접수 정책기획관-8137 (2026. 7. 2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多"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반영

나.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971명 → 8,079명(+108명)

나. 정원조정 내역

1) 정원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가) 본 청 : 1,588명 → 1,640명(+52명)

나) 도의회 : 161명(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5,610명 → 5,669명(+59명)

라) 지역본부 : 209명 → 207명(△2명)

마) 사업소 : 374명 → 373명(△1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22명(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7명(변동 없음)

2) 직종·직렬별 조정내역

가) 정무직 : 3명(변동 없음)

나) 일반직 : 2,183명 → 2,220명(+37명)

- 2급 : 2명 → 1명(△1명)
 - 이사관 △1
- 2 ~ 3급 : 2명(변동 없음)
- 3급 : 15명 → 16명(+1명)
 - 부이사관 +1
- 3 ~ 4급 : 3명(변동 없음)
- 4급 : 104명 → 103명(△1명)
 - 행정 △3, 행정·과학기술 +2
- 5급 : 441명 → 455명(+14명)
 - 공업 +1, 녹지 +1, 수의 +1, 시설 +1, 행정·공업 +3,
 행정·해양수산 +1, 행정·환경 +1, 행정·시설 +1,
 수의·수의연구관 +1, 행정·보건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행정·보건·간호 +1,
- 6급 : 726명 → 742명(+16명)
 - 세무 +1, 수의 +1, 시설 +2, 시설관리 +1, 운전 +1,
 행정·사회복지 +6, 행정·공업 +2,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2, 행정·시설 +2, 보건·간호 +1
 - 행정 △1, 공업 △1, 녹지 △1, 보건 △1, 열관리운영 △1
- 7급 : 649명 → 660명(+11명)
 - 행정 +3, 녹지 +1, 시설 +2, 행정·사회복지 +1, 행정·공업 +2,
 행정·농업 +1, 행정·해양수산 +2, 행정·보건 +1, 행정·식품위생 +1,
 행정·간호 +1, 행정·시설 +1, 공업·녹지 +1, 보건·간호 +1
 - 공업 △3, 보건 △1, 수의·수의연구사 △3

- 8급 : 213명 → 210명(△3명)
 - 식품위생 +1, 시설 +1,
 - 행정 △2, 공업 △1, 시설관리 △1, 운전 △1,
- 9급 : 12명(변동 없음)
- 전문경력관 : 16명(변동 없음)

다) 별정직 공무원 : 16명(변동 없음)

- 1급 상당 : 1명(변동 없음)
- 4급 상당 : 3명(변동 없음)
- 5급 상당 : 9명(변동 없음)
- 6급 상당 : 1명 → 2명(+1)
- 7급 상당 : 2명 → 1명(△1)

라) 연구직 공무원 : 245명 → 246명(+1명)

- 연구관 : 47명 → 48명(+1)
 - 농업연구관 : 25명 (변동 없음)
 - 보건연구관 : 6명 → 5명(△1)
 - 환경연구관 : 7명 (변동 없음)
 -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 9명 → 11명(+2)
- 연구사 : 198명 (변동 없음)
 - 학예연구사 : 2명(변동 없음)
 - 기록연구사 : 4명(변동 없음)
 - 공업연구사 : 2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 : 78명(변동 없음)
- 녹지연구사 : 10명(변동 없음)
- 수의연구사 : 7명(변동 없음)
- 해양수산연구사 : 10명(변동 없음)
- 보건연구사 : 32명 → 31명(△1)
- 환경연구사 : 46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농업연구사·환경연구사 : 1명(변동 없음)
- 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 3명 → 4명(+1)
- 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 1명(변동 없음)

마) 지도직 공무원 : 31명 → 32명(+1)

- 농촌지도관 : 10명 (변동 없음)
- 농촌지도사 : 21명 → 22명(+1)

바) 소방직 공무원 : 5,489명 → 5,558명(+69명)

- 소방정 : 31명(변동 없음)
- 소방령 : 138명 → 141명(+3명)
- 행정5급·소방령 : 1명(변동 없음)
- 소방경 : 443명 → 449명(+6명)
- 행정6급·소방경 : 1명(변동 없음)
- 소방위 : 505명 → 518명(+13명)

- 행정7급·소방위 : 1명(변동 없음)
- 소방장 : 753명 → 762명(+9명)
- 소방교 : 1,175명 → 1,185명(+10명)
- 소방사 : 2,441명 → 2,469명(+28명)

사) 경찰직 공무원 : 4명(변동 없음)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경제혁신추진단)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경제혁신추진단-4318(2026. 7. 20.)호

나. 법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 : 별도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10611(2026. 7. 20.)호

라.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 여성가족과-7578(2026. 7. 20.)호

마. 예산 수반사항(예산담당관)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예산담당관-9278(2026. 7. 20..)호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경상북도 직급·직렬별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총계	8,079	1,640	161	5,669	207	373	22	7
정무직 계	3	1					2	
일반직 계	2,220	1,410	153	94	196	340	20	7
2급 소계	1				1			
이사관	1				1			
2~3급 소계	2	1	1					
이사관·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6	13		1	2			
부이사관	16	13		1	2			
3~4급 소계	3	2	1					
부이사관·서기관	3	2	1					
4급 소계	103	69	10	4	10	8	1	1
행정	32	22	5		2	1	1	1
과학기술	4	2			1	1		
행정·과학기술	60	43	5	4	6	2		
과학기술·농업연구관	1					1		
과학기술·녹지연구관	1					1		
과학기술·수의연구관	2	1				1		
과학기술·해양수산연구관	1				1			
행정·과학기술·학예연구관	1	1						
과학기술·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1					1		
5급 소계	455	343	25	10	38	33	5	1
행정	212	163	19	9	8	7	5	1
공업	6	4			2			
농업	9	9						
녹지	9	6				3		
수의	5	5						
해양수산	8				8			
보건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환경		2	2						
시설		30	28				2		
방송통신		2	2						
운전		2	2						
행정·사회복지		8	8						
행정·사서		2					2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9	11			8			
행정·농업		10	10						
행정·녹지		12	10				2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30	22	4		4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학예연구관		1	1						
행정·기록연구관		1	1						
행정·공업연구관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2	2						
농업·농업연구관		1					1		
녹지·시설		2	2						
녹지·녹지연구관		3					3		
수의·수의연구관		11	2				9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관		3				3			
보건·약무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수의		3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약무		1	1						
행정·보건·간호		6	6						
행정·보건·환경		3	2		1				
행정·환경·해양수산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시설·학예연구관		1	1						
공업·환경·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공업·약무·간호		1	1						
행정·공업·보건·간호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의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농업·수위·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1					1		
의무·의료기술·보건·간호		1	1						
6급 소계		742	483	61	24	57	107	8	2
행정		296	199	49	11	9	18	8	2
세무		7	7						
전산		16	14		2				
사회복지		7	7						
사서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속기		2		2					
공업		20	12		2	5	1		
농업		22	17				5		
녹지		28	14				14		
수위		38	5				33		
해양수산		21				21			
보건		2	2						
식품위생		1	1						
간호		1	1						
환경		11	10			1			
시설		76	62			2	12		
방송통신		8	8						
시설관리		1					1		
운전		11	6		2		3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행정·세무		6	6						
행정·전산		12	8	3			1		
행정·사회복지		18	13	4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19	11			5	3		
행정·농업		5	5						
행정·녹지		7	6				1		
행정·해양수산		7				7			
행정·보건		6	6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18	15	1	1	1			
행정·위생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기록연구사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공업·농업		1			1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2	1				1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3	3						
농업·농업연구사		4	2				2		
녹지·녹지연구사		1					1		
수의·수의연구사		8	2				6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4				4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6						
보건·환경		2	2						
의료기술·간호		1	1						
환경·시설		2	2						
행정·전산·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공업·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3		2		1			
행정·농업·수의		2	2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약무		1	1						
농업·수의·농업연구사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농업·수의·방재안전		1	1						
행정·보건·식품위생·간호		1	1						
7급 소계		660	402	36	34	57	123	5	3
행정		253	187	25	9	13	12	4	3
세무		7	7						
전산		13	10		1	1	1		
사회복지		5	5						
사서		2			1		1		
숙기		4		4					
방호		1					1		
공업		40	10		8	6	16		
농업		21	12				9		
녹지		25	9				16		
수의		31					31		
해양수산		17				17			
보건		2	2						
식품위생		2	2						
간호		3	2		1				
환경		3	3						
시설		64	45		1	3	15		
방재안전		5	5						
방송통신		9	5		2	1	1		
시설관리		3			2	1			
운전		20	6	2	4	3	5		
전기운영		1	1						
사육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1	9	1				1	
행정·사회복지		14	13	1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8	6			2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농업		5	5						
행정·녹지		3	2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의료기술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5	12			1	2		
행정·학예연구사		2	1			1			
전산·환경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농업		1					1		
공업·녹지		1	1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2	1				1		
공업·방송통신		2	1		1				
농업·수의		3	3						
농업·농업연구사		1					1		
수의·수의연구사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사		3				3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5	4		1				
보건·환경		1	1						
보건·위생		1	1						
식품위생·약무		1	1						
환경·시설		1	1						
시설·해양수산		1				1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3	3						
행정·보건·위생		1	1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농업·녹지·수의		1	1						
농업·수의·농업연구사		1					1		
수의·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3					3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농업·수의·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1					1		
8급 소계		210	86	15	17	28	63	1	
행정		78	45	4	6	7	15	1	
세무		2	2						
전산		4	3				1		
사회복지		2	2						
숙기		2		2					
공업		16			6	5	5		
농업		7	2				5		
녹지		10	2				8		
해양수산		10				10			
보건		1	1						
식품위생		3	1		1	1			
간호		1	1						
환경		1	1						
시설		26	8		1		17		
방송통신		7	5			1	1		
시설관리		3					3		
운전		15	1	3	2	3	6		
전기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행정·사서		3		1			2		
행정·시설		2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3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간호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보건·환경		1	1						
9급 소계		12	1	1	1	3	6		
행정		2		1			1		
사서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운전		1					1		
전문경력관 소계		16	10	3	3				
가군 소계		3	2		1				
비상계획관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촬영편집기사		1	1						
나군 소계		9	5	2	2				
화생방관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촬영편집기사		2	2						
통상주재원		1	1						
투자통상요원		1	1						
사진영상촬영요원		2		2					
다군 소계		4	3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진영상촬영요원		1		1					
촬영편집기사		3	3						
별정직 계		16	7	8			1		
1급상당 소계		1	1						
지방관리관·경제부지사		1	1						
4급상당 소계		3	1	2					
국제관계대사		1	1						
행정·별정(전문위원)		1		1					
행정·과학기술·별정(전문위원)		1		1					
5급상당 소계		9	5	4					
비서관		5	5						
행정·별정(전문위원)		2		2					
행정·농업·별정(전문위원)		1		1					
행정·시설·별정(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장비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의장비서		1		1					
연구직 계		246	7		196	11	32		
연구관 소계		48			47		1		
농업연구관		25			24		1		
보건연구관		5			5				
환경연구관		7			7				
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11			11				
연구사 소계		198	7		149	11	31		
학예연구사		2	1				1		
기록연구사		4	4						
공업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78			65		13		
녹지연구사		10					10		
수의연구사		7					7		

직급 · 직렬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해양수산연구사		10				10			
보건연구사		31			31				
환경연구사		46			46				
농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		1			1				
농업연구사·보건연구사		1			1				
농업연구사·환경연구사		1			1				
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4			4				
해양수산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		1				1			
지도직 계		32			32				
지도관 소계		10			10				
농촌지도관		10			10				
지도사 소계		22			22				
농촌지도사		22			22				
소방직 계		5,558	211		5,347				
소방정		31	7		24				
소방령		141	26		115				
행정5급·소방령		1	1						
소방경		449	33		416				
행정6급·소방경		1	1						
소방위		518	27		491				
행정7급·소방위		1	1						
소방장		762	45		717				
소방교		1,185	27		1,158				
소방사		2,469	43		2,426				
경찰직 계		4	4						
경감		4	4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한시정원) 경상북도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호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항 (생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변화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 조정에 따라 총 정원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등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79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971	8,079	+108	
집행기관의 정원	2,295	2,334	+39	
소방공무원	5,489	5,558	+69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61	161	0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	22	0	
경찰공무원	4	4	0	

2. 비용추계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다.

나.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6년 104억 7천500만원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총 5년간 561억 7천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6 ~ 2030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소 계	56,174,814	10,475,643	10,842,252	11,221,680	11,614,389	12,020,850
일반직	21,552,063	4,019,106	4,159,740	4,305,327	4,455,984	4,611,906
소방직	34,622,751	6,456,537	6,682,512	6,916,353	7,158,405	7,408,944

*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일반직(103,054천원), 소방직(93,573천원)

연도별 보수인상률 3.5%를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 비	일반회계	10,475,643	10,842,252	11,221,680	11,614,389	12,020,850	56,174,814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10,475,643	10,842,252	11,221,680	11,614,389	12,020,850	56,174,814

5. 부대의견

가. 2026년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일반직 : 103,054천원, 소방직 : 93,573천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률은 3.5%를 산정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송영례 (054-880-2123)

"نال으니 사랑, 키우니 행복"



경 상 북 도

경북의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1. 정책기획관-8104(2026. 7.2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규칙정안	검토의견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 39명, 소방공무원 69명 등 총 정원 108명이 증가함에 따라 5년간 56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소요비용은 「202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 보수 인상율 3.5%를 반영하여 추계된 바 추계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 개정안은 경상북도 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끝.

예 산 담 당 관

서명생략

주무관 류재하 예산총괄팀장 조영길 예산담당관 대결 2026. 7. 20. 예산총괄팀장 전결
지진태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278 (2026. 7. 20.) 접수 정책기획관-8137 (2026. 7. 20.)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90 / vivianelove@korea.kr / 비공개(5)

"아이도 행복이도 희망이도 미래도"